

월간
재정포럼 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2월호 제164호

- 현안분석** · ●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노욱
● 재정성과의 제도적 접근/ 홍승현
● 연구개발 지원금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송호신

공공정책포럼 · 제1회 공공정책포럼

정책흐름 · 2009년 국세징수 실적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 |
|---------------------|---|
| 권두칼럼 | 02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송대희 |
| 현안분석 | 06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주요 쟁점 · 박노욱 23 재정성과의 제도적 접근 · 홍승현 35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송호신 |
| 공공정책포럼 | 48 제1회 공공정책포럼 |
| 주요국 조세동향 | 55 일본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외 |
| 정책흐름 | 62 2009년 국세징수 실적 65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66 일부 유럽 국가 재정위험 관련 영향과 대응방향 69 근무조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180만원 지원 72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80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82 201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88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5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
| 재정통계 | 98 교통세 예산 및 징수 외 |
| 이슈 & 포커스 | 102 “공공기관 일자리 만들기 적극 나서야” 외 |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KDI초빙연구위원)

2010년 벽두에 들어서면서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 경제의 불안한 운항에 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19일 일본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JAL(일본항공)이 파산을 신청하였다. 방만 경영이 파산의 원인이라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JAL의 파산은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야무지고 철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일본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말인가? 더구나 JAL은 한 때 세계 최대 항공사로 평가되었으며 일본의 히노마루 국기 문양을 항공사 로고로 달고 다니며 일본의 자긍심을 나타내었던 대표적 민간 회사가 아니었던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JAL의 방만 경영의 원인은 부실한 공공투자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일본의 부실한 공공투자의 산물인 지방공항이 일본 내에 100여개나 있다는 것이다. 이 100여개의 공항을 어쩔 수 없이 오고가야 하는 JAL의 국내 항공노선의 대부분이 적자노선이라는 것이다. 적자노선인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출혈 운행을 하다가 결국 파산을 당했다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공공투자의 재정부담이 JAL의 파산 가져와

JAL의 방만 경영과 관련된 정부의 첫 번째 잘못은 경제성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한 무모함이다. 신간센으로 인하여 국내 항공이용 수요가 감소 추세에 들어선 1990년에도 국내공항 건설이 경기 부양용 공공투자라는 명분으로 계속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부실을 예견하면서도 추진되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두 번째 잘못은 일본의 공항 건설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평야지가 부족하니까 바다를 매립하여 공항을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단가가 높고 자연히 일본 국내공항 이용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공항 이용료가 비싸니까 JAL의 국내항공로도

비싸다. 때문에 오히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일본 고객이 많다는 이야기다. 인천 국제공항은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일본 도시들로 더 많은 비행편을 띄우고 있다. 불요불급한 공공투자의 재정부담이 결국 JAL의 파산을 가져오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국토교통상도 인천공항이 일본 국내여행의 거점(Hub)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¹⁾.

왜 일본에서 이런 어이없는 공공투자 정책이 벌어졌는가? 세 가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잘못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한 경제개발 초기와는 달리 더 이상 SOC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시점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은 낭비로 연결된다. 둘째는, 일본 정치권에 최대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여온 건설업계의 로비를 그대로 받아들인 잘못이다. 건설업계는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공공사업을 최대로 악용했던 것이다. 정경유착의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지방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경제적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추진하자라는 논리를 받아들인 잘못이다. 지나친 지역균형개발론에 국가경쟁력이 발목잡힌 불행한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건설업계 그리고 정치권이 결탁하여 일본의 어이없는 공공투자사업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속에서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JAL이 파산을 신청한 다음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Keynes killed JAL”(케인즈가 JAL을 죽였다)는 재미있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요지는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공공투자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케인즈의 경기부양 재정지출이론을 맹종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케인즈 이론이 정치권이 주문한 불요불급한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너무나 쉽게 정치권에 의하여 이용당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투자가 적자재정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1990년에는 65% 수준이었으나 공공투자를 남발하면서도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했던 잃어버린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135%로 급증하였고 현재는 218%에 이르고 있다. 부실한 일본의 공공투자는 그 자체로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폐

.....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너무나 쉽게 정치권에 의하여 이용당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특징을 가졌다.
.....

1) 국내선 운항을 인천공항에 맡기고 있는 일본 (Japan cedes domestic air travel to South Korea / James Simms), 『한국경제』 외신보도, 2010년 1월 19일자, 한국개발연구원

.....
 잘못된 공공투자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의
 누적을 통하여 경제위기가
 다가와도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재정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해를 유발한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공공투자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의 누적을 통하여 경제위기가 다가와도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재정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부실한 공공투자가 산업경쟁력 잠식하는 결과 초래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에즈라 보겔(Ezra Vogel) 교수는 1979년 그의 저서〈일 등국가 일본〉(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에서 일본의 성공요인은 항상 현명하고 강력한 일본 관료들(all-wise-all-powerful bureaucracy)에 있다고 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up)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 이후 지속된 장기 침체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정부와 관료들은 보겔 교수가 기대한 것처럼 유효한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와 다카미츠(佐和隆光) 교토 대학 교수도 일본 정부는 마치 고대 이집트가 피라미드 건설을 하듯이 경제성이 없는 거대한 공공투자사업으로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고 한탄한 바 있다.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하버드 경영대 교수는 2001년에 그의 저서 〈일본경제 위기 보고서〉(Can Japan Compete?)에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공공정책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일본경제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때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던 정부가 이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실한 공공투자가 산업경쟁력을 잠식하여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의 쇠퇴를 자초하는 일이 어디 일본만의 일이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수많은 부실 지방공항이 적자경영으로 결국 문을 닫았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지방도로와 공공시설 등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한번 붓물이 터진 적자재정지출은 계속되는 속성이 있다. 누적되고 있는 국가부채에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가세되면 국가재정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최근 일본의 사례는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근 어설픈 경기부양용 재정지출확대로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딱한 사정도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때늦기 전에 부실 공공투자를 차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IPF**

* 이 일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성과의 제도적 접근
홍승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송호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npark@kipf.re.kr)

사회복지서비스의 초점과 내용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 서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초점과 내용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초점이 과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전의 개념이 강했다면, 지금은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경제적 자립으로 바뀌었다. 자활능력 배양이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목표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취약계층에게 근로의 의무와 연계된 소득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되어 왔다. 즉 취업연계를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자체에 경쟁과 성과계약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영리 목적을 가진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지배적이지 않고, 비영리기관들이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연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목표라는 정책방향의 전환에 따라,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운영 방식에도 변

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및 유인에 관한 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의 목표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통한 유인 제공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도 사업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자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부처간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취업지원사업이 결합됨으로써 정부부처 간의 역할 조정 또는 서비스의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연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됨으로써, 취업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간의 사업이 중첩되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담당부처의 사업 내용에는 취업지원을 위한 활동이 미약했고, 취업 관련 사업 담당부처의 사업 내용에는 취업의 난이도가 지극히 높은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장기 실업자 또는 취업의 난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내용에 취업지원 활동이 포함되고, 동시에 기존의 취업지원 활동의 초점도 취업의 난이도가 높은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 부처간의 사업영역에 수렴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실업급여 지급 등의 취약계층 지원 업무와 취업을 위한 서비스의 통합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동향 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였다. 전통적으로는 사회복지의 국가의 기본

사업의 목표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개념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다.

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개념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service provider) 역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인 역할(service enabler)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에는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첫째는 재원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둘째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환경을 마련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된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는 민간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구성에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기부액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재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과 사용료를 연계시키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화를 통해 기업이나 특정 그룹의 개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담을 부과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서비스의 경우, 외국의 경우 별도의 공공조직이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나라도 직업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는 공공조직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주·네덜란드·영국·미국을 중심으로, 취업 관련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 민간이란, 비영리 기관뿐 아니라 영리기관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이나 성과에 근거한 계약 등의 수단이 병행하여 도입된다. 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시장과 유사한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현금이나 바우처(서비스 사용권)를 서비스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성과에 근거한 계약을 도입하는 방식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사업의 결과와 보수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제공

자들과의 계약방식에도 성과에 근거한 계약이 포함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의 변화와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도 변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지원이 단순한 소득보조나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라고 불리는데 장기 실업자 또는 만성적 실업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취약계층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의 의존이 고착화되어 근로 및 자립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적 복지’라고 명명되어 2000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전략의 주요 요소는 다양하며 국가마다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소득보조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소득보조 수혜자의 의무를 강화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 행정체계 및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득보조 수혜기간의 제한의 사례는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서 개인이 평생을 통하여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¹⁾. 이러한 기간 제한은 무제한적인 보조로 인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성적 의존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제약조건 부과는, 소득보조 수혜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훈련이나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부 제공의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보조 수혜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방식과 더불어, 취업지원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는 공공조직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조직이 가진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

활성화 전략의 주요 요소는 소득보조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소득보조 수혜자의 의무를 강화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 행정체계 및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1) TANF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저소득층 지원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로서, 이러한 수급기간의 제한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주정부가 다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계속적으로 소득보조를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60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으로 인해 소득보조가 중단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득보조 관련 행정과
취업지원 관련 행정의
통합을 통하여, 저소득층
소득보조사업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키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민간조직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하였을 경우, 성과계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조직과의 계약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취업 달성과 연계되어 성과급이 설정된 계약 형태가 가장 직접적인 성과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계약 형태의 도입시 중요한 쟁점은, 민간과 정부의 위험 분담 문제와 민간의 전략적 행동의 방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결과지향적인 성과계약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초점을 명확히하고 효과를 제고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과정 및 산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어 상담 횟수나 알선 횟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수준의 서비스 내용이나 활동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관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노력도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적 개혁의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소득보조 관련 행정과 취업지원 관련 행정의 통합을 통하여, 저소득층 소득보조사업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소득보조사업의 일종인 실업급여 지급 행정과 취업알선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취업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소득보조와 취업지원 행정이 통합된 경우는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행정과 취업알선 행정의 통합뿐 아니라, 사회복지급여 지급 행정도 통합된 곳이 있다.

외국의 현황을 보면,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쉽게 발견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연계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는 양 행정업무를 통합시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복지급여나 장애보조급여 등의 행정과 취업지원 행정을 통합시킨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Work & Income New Zealand, 노르웨이의 NAV, 영국의 Job Centre Plus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조직이나 예산의 통합 없이도, 다른 조직의 사무소를 각 지역의 한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기관간의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지역에서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재원조달을 일임하는 경우, 수혜비율(caseload)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1996년에 100% 지역재원조달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성인의 수급률이 1994년과 2002년 사이에 급감하여, 캐나다의 경우는 절반, 미국의 경우는 2/3로 감소하였다. 네덜란드도 2004년 100% 지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꾸었다. 이렇게 지방정부에게 재원조달의 의무를 부과할 때, 지역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을 추진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재원조달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사업 관련 행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방정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에의 권한 이양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나 성과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위에서의 논의와 연결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과관리는 민간사업자나 비영리기관 등의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권 부여에 수반되는 성과관리의 강화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요약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이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배양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시키겠다는 사업의 수단과 목적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서비스 자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운영 방식 및 관련된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정부에게 재원조달의 의무를 부과할 때, 지역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금지원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수혜자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복지로 개념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취지하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근로조건이 부과되는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하지만,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사업의 목표로 보고, 경제적 자립의 척도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수급을 본다면, 자활사업의 성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할 때 수반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성과계약이라는 요소를
도입하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업 참여자 중 실제 탈수급 되는 비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복지 의존도를 줄인다는 원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전향적으로 성과계약 요소를 포함한 시범자활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할 때 수반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성과계약이라는 요소를 도입하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활사업 자체가 민간부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민영화 측면보다는 기존의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성과계약 방식을 실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쪽에서도 사업 대상자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취약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의 목적 및 사업대상에 있어서,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와 중첩되는 현상을 불가피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 사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각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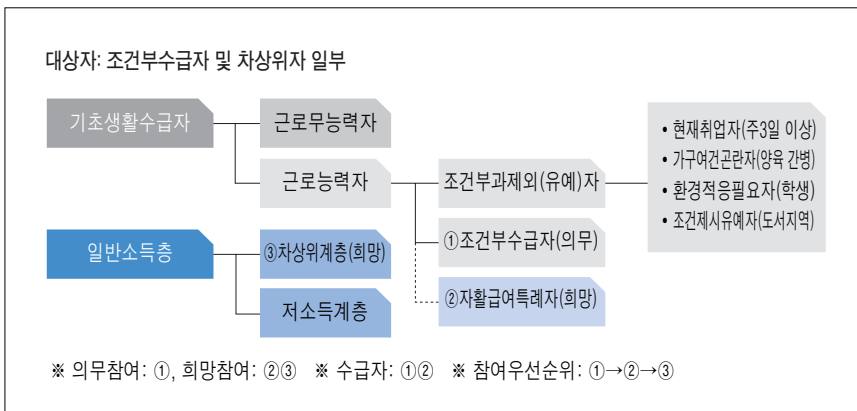
먼저 자활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자활사업의 내용에는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명시적인 자활사업의 목표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동시에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금지원의 형태에서는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나누어진다. 근로능력자는 다시 조건부과제외자와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된다. 자활사업에의 참여 의무가 제외되는 조건부과제외자는 현재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양육 및 간병 등의 가족여건 사유, 학생, 도서지역 거주자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수급자를 의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자와 조건부과

제외자를 제외한 조건부수급자가 일차적인 자활사업 대상자이다.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상회하지만, 일정기간 기초생활수급의 특례를 주는 자활급여특례자가 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계층 중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의 우선순위는 조건부 과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차상위계층 순서이다.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서도, 근로능력 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 및 비취업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1] 자활사업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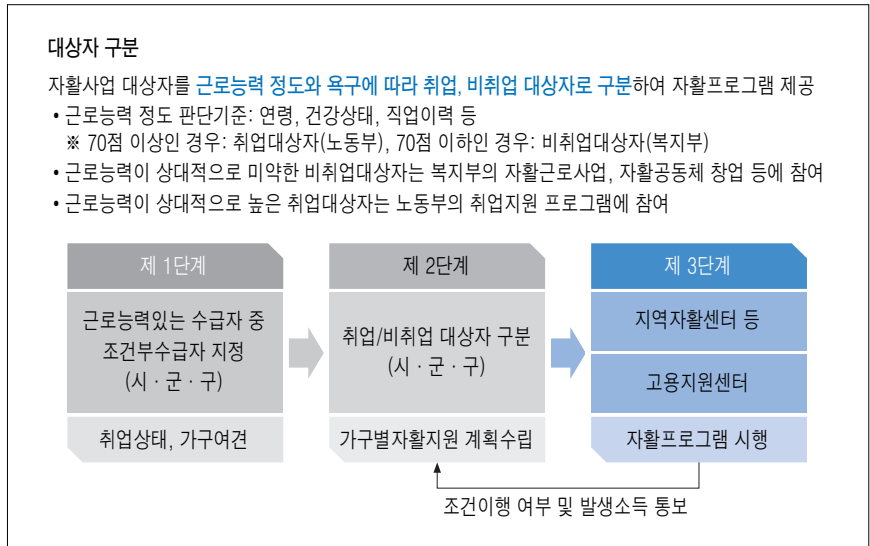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서도, 근로능력 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 및 비취업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로능력을 판정하기 위해서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활용하여,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 등에 참여한다. [그림 2]에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흐름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²⁾.

2) 이렇게 복지부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낮아 취업이 어려운 집단이므로, 경제적 자립을 사업의 성과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운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다는 것뿐이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사업의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경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 내에서는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지원 등 기타 등으로 사업 내용이 분류되고 있다.

[그림 2] 사업 대상자 구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8년 12월 현재 7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참여자는 2,243명이고,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68,246명이다.

<표 1>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단위: 명)

| 계 (a+b) | 소계 (a) | 복지부(a) | | | | | | | 노동부 (b) |
|------------|-----------|-----------|-------------|-----|-----------|------|-------------------|---------------|------------|
| | | 자활근로 | | | | |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창업 지원 등 기타 | |
| | | 시장 진입형 | 사회적 일자리형 | 인턴형 | 근로 유지형 | 지자체형 | | | |
| 70,489 | 68,246 | 10,647 | 23,900 | 145 | 23,292 | 193 | 1,625 | 8,444 | 2,243 |

보건복지가족부 자료(2008년 12월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부 자활사업 내에서는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지원 등 기타 등으로 사업 내용이 분류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내용과 담당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자활사업의 유형과 실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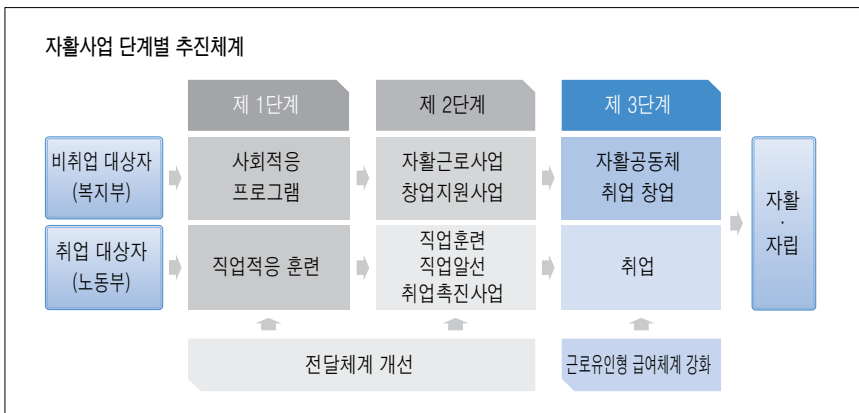
| 자활급여종류 (구체적인 사업지정) | 기준(근로능력점수에 의한 판정 포함) | 사업실시 기관 |
|-----------------------|---|---|
| 직업적응훈련 | 근로의욕 고취 및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고용지원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
| 취업알선 | | 고용지원센터 |
| 직업훈련(창업훈련)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취업이 가능한 자 | 고용지원센터 |
| 자활공동체사업 | | 고용지원센터 |
|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욕구가 높은 자 기술습득 정도·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자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위탁기관 |
| 자 활 근 로 | 시장진입형 |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등 |
| | 인턴형 | |
| | 사회적일자리형 | |
|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이-가능한 자 | 시·군·구 등 |
| 디딤돌 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 알코올 의존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상습적인 조건불이행자 등 |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대학연구소, 지역자활센터 등 |
| 생업자금용자 | 공동체 및 개인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시·군·구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공동체에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취업대상자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

[그림 3]에서는 〈표 2〉에 제시된 사업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여준다. 근로능력에 따라 수급자들을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노동부와 복지부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한다.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공동체에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취업대상자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

[그림 3] 자활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동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제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표 3〉에서는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지역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수급자의 인정 및 생계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담당 자활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지역자활센터로서 각 시군구에 설립되어 있는 민간조직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일정액의 사업비를 매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제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자활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 구분 | 기능·역할 | 비고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
| 시·도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지원계획(매년 1, 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 자활사업 총괄시행 |
| 읍·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확인 조사 | 조건부수급자 관리 |
| 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취업지원계획(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 취업대상자 총괄관리 |
| 고용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 취업지원 시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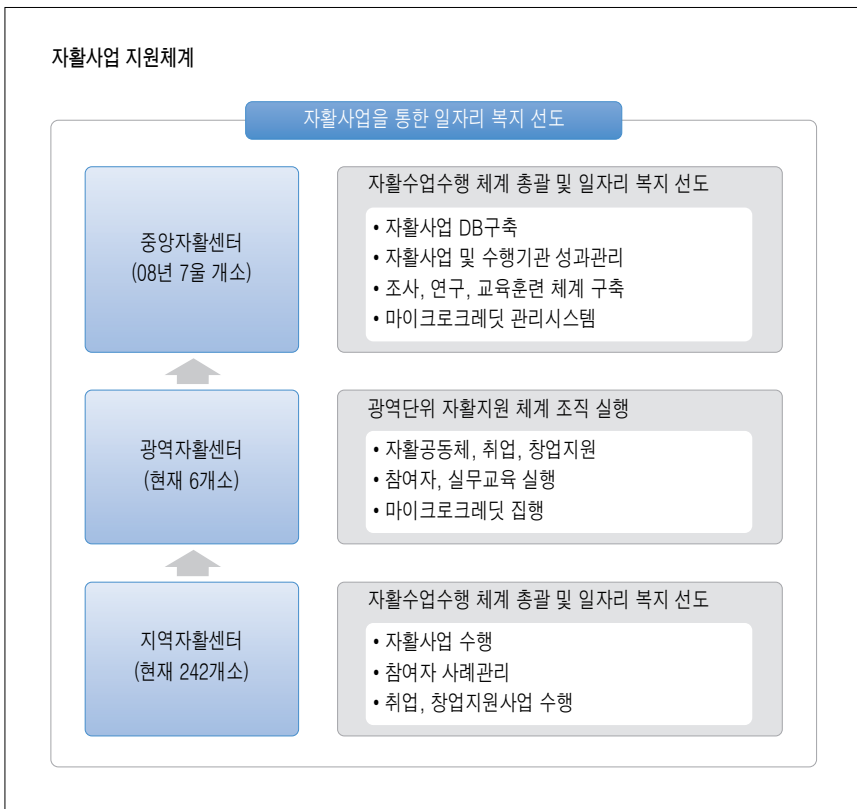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부의 자활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활센터는 [그림 4]와 같이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며, 광역자활센터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일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08년에 신설된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이라면,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자체의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자활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성과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림 4] 자활센터의 운영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렇게 기존의 자활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성과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이 이루어진 비율은 지금껏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부터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 자활사업에서도 일정액을 평가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유인의 강도는 약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242개 지역자활센터에 평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업의 초점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10억 여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서는 복지부와 민간사업자간에 명시적인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성과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1인당 기본 사업비가 고정급으로 지급되고, 취업성공, 취업 6개월 유지, 탈수급 달성이라는 단계별로 별도의 성과급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게 구성되어 있다³⁾. 그리고 성과관리형 사업의 전국적 확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에서의 변화가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업의 초점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변화와 함께, 노동부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 까지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사업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가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이 미흡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은 수혜대상이 협소하고, 대규모의 적용 누락자가 존재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자활사업은 취업촉진 기능이 미흡하며,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불확실하며 사업간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사업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동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개인 진단 및 경로 설정→의욕 및 능력 증진→집중 취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유인체계인데 취업성공자에게 취업 성공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취업을 1개월 유지할 경우 60만원, 3개월 유지할 경우 40만원을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취업 성공시 유인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복지부의 성

3) 자활특례대상자가 존재하므로, 탈수급보다는 생계급여 중단 여부로 탈수급 기준을 변경하여 2010년 시범사업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과 대비되는 유인체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18~64세의 연령층 중에서 일정 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이하 가구원이 대상이다. <표 4>에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 성과계약을 통해 강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표 4>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

(단위: 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최저생계비(A)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소득인정액 (B=A×1.5) | 736,268 | 1,253,645 | 1,621,779 | 1,989,914 | 2,358,047 | 2,726,181 |
| 보험료 (B×0.0254) | 18,701 | 31,843 | 41,193 | 50,544 | 59,894 | 69,245 |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IV. 우리나라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업보다는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 등의 형태로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방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 성과계약을 통해 강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기존 자활사업에서 넘어오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외에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원대상의 확대를 추진할 뿐 아니라, 별도의 유인을 취업 성공자에게 제공할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양쪽에서의 변화는, 취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의 세계적 추세와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본장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방향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문제 제기와 더불어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고의

양 사업의 수단·목적·대상에서 중복성이 존재하고, 유인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양 사업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발생 가능성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주요 쟁점은 각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과 양 사업간의 중복성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먼저 양 사업간의 중복성 관련 문제를 살펴보자. 일단 사업대상에 있어서 중복성이 발생한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조건부 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기존의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대상뿐 아니라 차차상위계층까지 사업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존의 자활사업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을 분담하였으나, 조건부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나 차차상위계층까지 사업대상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양 사업간에 사업대상자의 중복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대상의 중복과 더불어 사업수단 및 사업목적에 있어서도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수단으로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업목적도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중복이 있더라도 양 사업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너지가 발생한다면, 사업의 중복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양 사업간의 유인체계가 상이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사업참여자에게 취업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사업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유인이 교통비 등을 포함한 실비 제공 정도이다. 그러므로 사업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을 했다고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쟁점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요약하면, 양 사업의 수단·목적·대상에서 중복성이 존재하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유인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양 사업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발생 가능성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조직에서는, 취약계층은 사회복지적인 사례관리에 기반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 담당조직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현장에서는 기존 자활센터와 고용지원센터간의 역할 분담 문제와도 관련이 될 것이다. 양 사업간의 중복성 완화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향후 조정방향에 대한 부분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는다.

4) 양 사업의 유인체계의 정합성 문제에 앞서, 양 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가 먼저 제기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복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확인 장치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양 사업 수행 주체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양 사업간의 유인체계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있어서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취업성공자에게 일회성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기존 고용지원센터의 역량 문제이다. 실업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유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주에 대해 특정 유형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유형의 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유인체계이다. 마지막은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에게 서비스 참여기간 동안 생활비보조 및 동기 부여 목적의 소득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 공급 여건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각 유인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흥미롭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는, 취업성공자에게 취업성공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회성 성공보수이므로,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취업에 대한 상징적인 동기부여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회성 성공보수는 임금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일시적 수입으로서의 효과만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⁵⁾. 그러므로 사업 자체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회성의 취업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다음 쟁점은 고용지원센터의 역량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맞춤형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과 고용지원센터에 성과에 근거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공적인 조직인 고용지원센터 체제에서 이러한 유인제공만으로 사업 내용의 변화와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의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과 관련된 쟁점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성과계약 관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성과계약 형태는, 사업의 운영과정 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성과에 근거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과 관련된 쟁점은,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성과계약 관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5) 다만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과 달리 취업에 대한 별도의 유인이 있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를 선호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계약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억제,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위험 분담문제, 사업자 간의 유효 경쟁 유지 문제, 정부의 계약관리 능력 등이다.

한 계약만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식 성과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외국에서의 일부 사례에서는 사업의 운영방식은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재량권하에 있고, 단지 결과에 근거한 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계약을 적절하게 디자인하고 관리하느냐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제재하는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은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시 어떤 형태의 계약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체들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기존의 하부구조가 적절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관찰되고 있다. 성과계약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억제,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위험 분담문제, 사업자 간의 유효 경쟁 유지 문제, 정부의 계약관리 능력 등이다⁶⁾.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동향과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확대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였다. 양쪽 방향에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각 사업들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각 사업의 주요 쟁점에 해결 방안이 향후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시너지 창출을 위한 양 사업간의 조율이 필요함을 본고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요 쟁점이 향후 적극적으로 해결되어, 취약계층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 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KIPF

<참고문헌>

박노옥,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성과계약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주요 쟁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노옥(2009)을 참조하라.

재정성과의 제도적 접근



홍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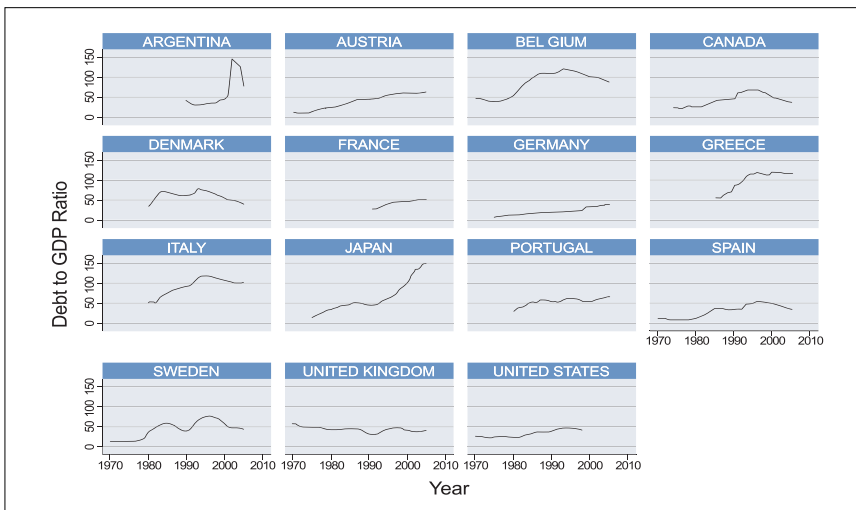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shhong@kipf.re.kr)

I. 도입

20세기 후반에 걸쳐 많은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큰 폭의 정부부채 증가와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정부부채와 재정수지를 포함한 전반적 재정성적을 경제학적인 틀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존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틀에서 벗어나, 여러 “제도적” 요인을 통해 각국의 서로 다른 재정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방식이 점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림 1] GDP 대비 중앙정부의 부채비율 (Jaimovich & Panizza, 2006)



제도적 측면의 연구들이 가지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재정상황의 악화가, 경제주체들 각각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데서 시작한다.

[그림 1]은 Jaimovich & Panizza(2006)의 자료를 이용하여 15개국의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의 시간적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추이에 대해 학자나 정부관리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는, 각국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존의 주된 분석방법은 여러 거시변수들을 사용한 전통적 거시경제학 분석방법이었는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에서 보이는 국가 간의 차이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결국, 기존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틀에서 벗어나, 여러 “제도적” 요인을 통해 각국의 서로 다른 재정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방식이 새로이 점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이 Maastricht 조약을 통해 회원국의 재정적자나 부채수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각국의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70~80년대의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에 각 국가들의 재정정책이 왜 서로 크게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었는가 등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재정관련 문제들이 제도적 분석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기존의 제도적 측면의 연구들이 가지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재정상황의 악화가, 경제주체들 각각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데서 시작한다. 재정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하는 잘못된 유인구조(incentive system) 때문에, 각 개인들의 최선의 선택이 합쳐지면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바탕에는 현대의 국가운영 구조-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부의 특정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재원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 혹은 사회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국민 전체로 돌아가게 되어, 혜택과 부담의 불일치 문제가 불가피해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

다. 그 첫 번째가 일반 국민인 유권자들과 선출된 정치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이고, 두 번째가 재정 지출의 외생성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공유지(共有地)의 비극(Tragedy of Commons; Common Pool Problem) 문제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민(주인)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정치인(대리인)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특히, 정치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관계가 명확치 못하거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국민이 감독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치인들의 일탈의 유인이 높아져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두 번째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공유재원의 사용을 통한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자원 사용의 결정에 있어서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결국 공유재원의 남용을 가져오는 문제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 문제점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경제주체들에게 적절한 유인구조를 제공하지 못하면, 거대한 재정적자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유인구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제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유인구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제도를 크게 두 가지 관점 「선거제도와 정치제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1. 선거/정치 제도의 관점

첫 번째 관점은 선거제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제도적 관점이다. 선거/정치 제도 자체나 그 안에서의 힘의 역학구조 등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자세히 이루어졌으나, 경제학에서는 이 제도들 자체보다는 재정세의 영향 측면을 강조하여 살펴본다. 특히, 제도적으로 “주인-대리인 문제”를 제어하여 재정성과와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성(accountability)과 경쟁(competition)이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데, 현재의 선거제도를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선거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대부분의 제도가 그러하듯이 선거제도도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포함된 부분들의 다양성만큼이나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득표수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electoral formula) 또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투표 방식-예를 들어, 후보자 vs. 정당에 대한 투표-에 의해서도 제도를 나누기도 한다. 여러 기준 중

첫 번째 관점의 중심은 선거/정치제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이고, 두 번째 관점의 중심은 재정이나 예산제도에 있어서 “공용지의 비극문제”이다.

경제학의 제도적 분석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선거구의 크기¹⁾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크게 다수대표제(plurality rule)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다수대표제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 후보가 의원으로 선출되는 방식인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당과 비집권당의 양당(兩黨) 정치체제가 주로 나타나는데, 선거의 결과가 개인 후보자의 기존 성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성의 문제가 잘 확보된다는 장점이 큰 반면, 반대로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의 입안이 늘어날 가능성 또한 높아져, 공용지의 비극 문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²⁾.

한편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생각하고 그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들을 선출하는 구조로,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사용해오고 있다. 이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여러 정당, 특히 특정 사회·지역·인종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보통 아주 작은 규모의) 군소정당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경우 공용지의 비극 문제뿐만 아니라 책임성의 하락 또한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군소정당 난립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다수대표제에서는 최소득표수(minimum vote threshold)제도라는 것이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득표수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이 최소득표수를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하면, 이보다 낮은 득표수를 획득한 정당들은 의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의원석 확보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계층 혹은 지역을 다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 작은 규모의 군소정당의 수를 줄이는 동시에, 특정 계층 혹은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난무하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2. 재정/예산제도의 관점

두 번째 관점의 중심은 재정이나 예산제도에 있어서 공용지의 비극(Common Pool Problem)문제이다. 여기서는 재정정책이 가지는 외생성(externality)의 존재와 협력의 부재로 인해 이 외생성이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충분이 인지되지 못하고, 따라서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정/예산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걸쳐 재정/예산관련 결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비공식적 절차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제도적 분석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보통 다음의

1) 정치학에서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른 분류로 소선거구제(1구 1인), 중(대)선거구제(1구 2~5인), 그리고 대선거구제(1구 5~7인 이상)로 나누고, 본문의 구분방식은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의 구분은 주로 ‘선출방식’에 의한 구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 이렇게 재선(re-election)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 늘어나서 재정적자가 증가한다는 주장(Buchanan & Wagner, 1977)은 전통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는 주로 개도국들 및 민주주의 초기단계 국가들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고,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Brender & Drazen, 2005; Shi & Svensson, 2006).

4단계(특히 첫 3단계)로 나누어지는 예산 절차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적 요인들이다. 그 첫 번째는 행정부의 “예산수립”의 단계로, 주요 제도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재무장관의 권력 정도, 예산의 범위 및 구체성 정도, 행정부 내의 협상구조, 정부 부처간 이해 조정 절차 등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입법부의 “예산승인” 단계로, 의회의 예산안 수정 가능 정도, 관련 위원회들 간의 권력구조, 예산안의 일괄 혹은 분리 표결 여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고, 세 번째 단계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단계로, 예산 개정 가능성과 그 용이성, 이월규정, 이 전지출의 제한 정도, 재무장관의 예산 집행 조정능력, 추경편성의 용이성 등이 제도적 요인으로 논의된다. 마지막 단계는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의 단계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사후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단계지만, 제도적 분석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³⁾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³⁾.

일단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정리되는 예산관련 절차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해 얼마나 관련 외부효과를 내생화(internalize)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절차가 분산적(fragmented) 혹은 집중적(centralized)이라고 구분된다⁴⁾. 예를 들어, 예산결정 과정의 경우, 지출관련 부서의 장관 수가 많을수록 서로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분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절차가 분산적일수록,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예산제도 관점에서 중심이 되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관련 절차의 집중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집중도의 증대 문제를 예산 절차의 각 단계 속에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두 번째 예산승인 단계에서는, 의회 내의 토론과 투표 절차들의 통제가 중요한데, 특히 이 단계에서는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수립 단계에서 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자(국회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결국 제도적으로 이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세 번째의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른 정확한 집행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러 절차에 걸쳐 집중도를 증대하기 위한 통제방식으로, 크게 대리인 방식(delegation approach)과 계약방식(contract approach)의 2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대리인 방식은, 행정부 안에서나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존재하는 수직적 권력구조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여러 절차에 걸쳐

집중도를 증대하기 위한

통제방식으로, 크게 대리인

방식과 계약방식의 2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3) 예산이 ‘법률’의 형태를 지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사법제도 또한 제도적 측면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법권의 측면에서 예산제도의 재정예의 효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관련 논의도 찾아보기 힘들다.

4) 때로는 ‘collegial’과 ‘hierarchical’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Alesina & Perotti, 1999).

예산 관련 제도 혹은 절차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들은 선거제도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제도적 측면을 따로 살펴보는 것보다 제도들의 조합 속에서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때때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등의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절차 전반에 있어 강력한 결정권자의 존재이다. 주로 재무장관(혹은 수상)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련 내각회의에서 안건을 설정(*agenda setting*)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예산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서 모든 외부효과를 내생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입법부의 예산승인 단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에 추가 혹은 수정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가지는 외부효과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부성의 내생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정책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입법부의 예산안 수정 가능성 및 범위를 줄이는 것이 대리인 방식의 통제에 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리인 방식과는 달리, 계약 방식에서는 강력한 결정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외부효과의 내생화를 이루기 위해, 정당 대표자들 간의 토의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의(*agreement*)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계약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권 초기 연합정권(*coalition government*) 형성에 있어서, 구성 정당의 대표자들 간에 토의를 통해 합의사항(*coalition agreement*)을 만들어 낸다. 이 합의에는 주요 재정지표의 목표치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 목표치들을 바탕으로 연합정권의 예산안의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게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예산안에 따라 정확히 집행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재무장관에게는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으로 행정부 전반에 대해 입법부의 강력한 감독 기능과 예산승인 과정에서의 수정권한은 이 계약 방식의 통제를 통한 집중도 증대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3. 선거제도와 예산제도의 결합

앞에서 논의된 예산 관련 제도 혹은 절차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들은 선거제도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제도적 측면을 따로 살펴보는 것보다 제도들의 조합 속에서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때때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 방식은 의사결정의 수직적 위계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민주적 사회에서는 각각의 정치정당 내부에서 주로 나타나며, 서로 다른 정당 간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정부 구성이 단일정당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인 방식이 유용하게 작

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다수정당 간 연합정권의 경우, 정부부처 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가 단일정당 정부인 경우에 비해 더 다양한 경향을 보이기 쉽다. 따라서, 부처 간 타협을 통한 우선순위 조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정권 초기에 연합정권 합의(coalition agreement)를 통해 외부효과의 내생화를 위한 많은 사항들을 결정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어떤 방식의 접근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정권의 형태(정당의 수)에 큰 영향을 받고, 이 정권의 형태는 다시 선거제도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다수대표제에서는 양당정치와 단일 집권정당의 출현이 많고, 비례대표제에서는 다수당의 연합정권 형태가 주로(특히 최소득표수가 낮을 때) 나타난다(Taagepera & Shugart, 1993).

예산 절차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의 결정에 있어, 대리인 방식은 다수 대표제를 통한 단일정당 정부형태에 더 적절하고, 계약 방식은 비례대표제의 연합정부에 더 적절한 형태이다.

<표 1> 절차의 집중도를 높이는 두 가지 방식의 비교

| | | Delegation Approach | Contract Approach |
|------|---------------------|-----------------------------|-------------------|
| 권력구조 | | 수직적 구조 | 수평적 구조 |
| 행정부 | 정부형태 | 단일정당 정부 | 다수당 연합정부 |
| | 재무장관 | 계획/집행/감독 등 절차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 | 주로 집행 감독기능 |
| | 재정목표에 대한 commitment | 약함 | 강함 |
| | 강제수단 | 직위에서 해임 | 연합(coalition)의 해체 |
| 입법부 | 의회의 예산안 수정 | 범위/가능성이 작음 | 많은 부분 수정 가능 |
| | 행정부와의 관계 | 행정부에 의해 예산 변경 권한 제한 |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감독 기능 |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예산 절차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의 결정에 있어, 대리인 방식은 다수 대표제를 통한 단일정당 정부형태에 더 적절하고, 계약 방식은 비례대표제의 연합정부에 더 적절한 형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된 결론은 여러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단순히 정부의 부채/적자 수준과 집중도의 음(-)의 관계(von Hagen, 1992; von Hagen & Harden, 1994)뿐 아니라 집중도와 관련된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수화하여 살펴보거나(Alesina et al., 1999) 혹은 정치/사회 제도적 측면과 함께 살펴보아도(Stein et al., 1998; Hallerberg et al., 2007) 동일하게 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제도적 측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제도 측면에서의 구분도 두가지 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면을 살펴 그 제도들에 알맞은 통제방식을 추정해 낼 수도 있는데(Hallerberg et al., 2007), 실제로 몇몇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앞서 제시된 조합이 사용되는 예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유럽에서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로,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단일정당의 다수당 정권이 출현한 전례가 없는 국가이다. 수상(Prime Minister)이나 재무장관은 거의 실질 권력이 없고, 대부분의 재정 목표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정권 초기의 연합정권 합의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목표 준수(遵守)를 위한 재정운용이 내각의 중요한 임무가 된다. 대신, 이러한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의회 내에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의장은 해당부처 장관과는 다른 정당 출신이 임명되게 되어 있어서, 입법부가 강력한 감독기능을 행사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한편 영국은 프랑스, 그리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순전한 형태의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수상이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아 모든 내각의 임명 및 파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수상 밑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하여, 각 부처 장관과 일대일 협상을 통해 예산을 결정하고, 협상에 실패 시에는 고위장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재무장관의 의견이 채택된다.

네덜란드나 영국과는 달리 복합적 형태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two ballot” 선거제도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선거제도에서는 한 번의 투표에서 개인 후보자에게 한 표(다수대표제), 그리고 지역의 정당에게 한 표(비례대표제)를 행사하는 것인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단일정당의 다수당 정권이 탄생한 적이 없고 항상 연합정권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네덜란드와는 달리 대리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다만 재무장관의 권한이 일반적인 대리인 방식의 국가들에 비하면 약한 편으로, 다른 대리인 방식의 국가들에서처럼 안건 설정(agenda setting) 권한은 없고, 대신 어떤 안건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만이 주어진다. 하지만, 재무장관에 의해 거부된 안건은 수상(Chancellor)와 내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복될 수 있어서, 재무장관의 재량권에 대한 제약이 명확하다.

4. 정치제도와와의 결합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 등의 정치제도 측면에서의 구분도 앞서 언급한 방식들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권력구조가 수직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두 가지 통제방식이 결정되므로, 같은 의원내각제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정부 구성이 단일정당인지 아니면 다수의 연합정당인지에 따라, 대리인 방식이 적합한지 혹은 계약 방식이 더 적합한지 결정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권력 구조가 동일 정당 내부에서는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정당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정당의 연합정권에서는 동일 정당으로 이루어진 내각의 경우에 비해 부처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호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산은 정권의 구성 정당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대리인 방식의 경우는, 부처간 협상에서 재무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내각의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원내각제에서 적절한 통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예산을 강제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단일정당의 정부에서 강력한 재무장관 혹은 수상의 존재는, 해당 장관의 파면을 통해 개별 장관의 일탈(逸脫)을 제어할 수 있지만, 연합정부의 경우 이러한 파면은 구성 정당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적당한 방식이 되지 못하고, 대신 연합(coalition)의 해체라는 극단적 위협만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여 여러 정당 출신의 장관들의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주된 정당이 연합을 해체하더라도, 다른 연합을 손쉽게 형성할 수 있는 다른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재선거를 통하더라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일수록 위협의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형태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좀더 복잡한 형태의 역학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이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⁵⁾, 이러한 경우 예산의 절차에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의견 조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단 예산절차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은 의원내각제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단지, 내각이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여러 부수적인 절차상의 제도에 있어 구조적으로 대리인 방식에 적합한 모습을 띄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에서도 적절한 수직적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절차상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데, 이는 관련 위원회의 구조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형태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좀더 복잡한 형태의 역학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5)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1990년에서 1995년까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20개 국가들의 경우 약 반수의 국가들이 대통령의 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달랐다. (Stein et al., 1998)

대부분의 재정준칙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삼고있는데, 한편으로는 성과 비교에 용이한 반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힘들어 재정운영에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단점도 있다.

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관계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의 경우에 비해 좀더 동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법률상 이 관계가 더 동등할수록 절차상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계약 방식(contract approach)의 요소가 추가될 필요성 또한 높아진다.

5. 기타 재정제도적 측면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예산 절차 이외에도, 재정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의 재정성과의 영향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범위의 재정준칙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정준칙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출한도 설정, 적자/부채 한도 설정, 균형재정 조항 등의 수치적 목표는 한편으로는 사후 결과 혹은 성과 비교에 용이한 반면, 최근의 금융위기처럼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힘들어 재정운영에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단점도 있다. 실제 재정준칙을 실행해 온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준칙이 더 효과적인 경향을 보이고, 몇 개의 준칙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효과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준칙의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원으로의 대체를 통한 규제의 우회방식이 개발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 재정준칙의 효력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보이고, 혹은 우회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제도적 환경에 관한 요인으로 예산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절차의 투명성(transparenty), 각종 권한/의무에 관한 규칙들, 중기재정 도입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는 경우보다는 상호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 다른 제도들 속에서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III. 결론

이상에서 재정의 성과, 특히 재정 건전성과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는 재정적자 및 부채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인 제도적 측면에서의 분석방법을 살펴 보았다. 기존 거시경제학의 분석방법은 지난 수십 년간의 다양한 각국의 경험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했고, 그 대안으로 제도적 측면의 분석이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이 새로운 분석 또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부분이 경제학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엄밀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분석이다. 앞서의 논의에서도 드러나지만, 제도적 분석의 많은 부분이 제도의 ‘정성적(qualitative)’인 특징들을 다루기에,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통계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점차 실제자료를 사용한 다양한 통계분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제도라는 정성적 개념을 정량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원칙적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분석들을 통해 기존의 이론에만 머물렀던 논의의 여러 사항들을 일부나마 통계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방법론적인 논의와 함께 실증분석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이외에도, 본고에서 살펴본 제도적 분석방법은 앞으로도 많은 추가적 발전의 여지가 있다. 더욱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것들 각각 혹은 전체적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유인구조(incentive system)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국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나갈 때, 어떠한 정책/제도적 조합이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서, 이러한 제도적 분석이 더욱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KIPF**

각국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 나갈 때, 어떠한 정책/제도적 조합이 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서, 이러한 제도적 분석이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Alesina A., R. Hausmann, R. Hommes, and E. Stein, “Budget Institutions and Fiscal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9(2), 1999, pp.253~273
- Alesina A. and R. Perotti, “Budget Deficits and Budget Institutions,” in J.M Poterba and J. von Hagen eds. *Fiscal Institutions and Fiscal Performance*, NBER/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Brender, A. and A. Drazen, “Political Budget Cycles in New Versus Established Democraci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7), 2005, pp.1271~1295

- Buchanan, J. and R. Wagner, *Democracy in Deficit*,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 Hallerberg, M., R. Strauch, and J. von Hagen, "The Design of Fiscal Rules and Forms of Governance in European Unio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3, 2007, pp.338~359
- Jaimovich, D. and U. Panizza, "Public Debt around the World: A New Dataset of Central Government Debt," IDB Working Paper #561, 2006
- Shi, M. and J. Svensson, "Political Budget Cycles: Do They Differ Across Countries and Wh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90, 2006, pp.1367~1389
- Stein, E., E. Talvi, and A. Grisanti,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iscal Performance: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 NBER Working Paper #6358, 1998
- Taagepera, R. and M.S. Shugart, "Predicting the Number of Parties: A Quantitative Model of Duverger's Mechanical Effe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7, No.2, 1993, pp.455~464
- Von Hagen, J., "Budgeting Procedures and Fiscal Performance in European Communities," *Economic Papers* #96, 1992
- Von Hagen, J. and I. Harden, "National Budget Processes and Fiscal Performance" *European Economy* No. 3, 1994, pp.311~418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hsong@kipf.re.kr)

I. 서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주로 연구개발 관련 총량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인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인 실증 연구들은 주로 연구개발활동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기업 수준의 미시적인 실증 분석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효과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후자의 경우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정부 보조금이 개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느냐 또는 구축하느냐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에 기초한 거시적인 측면과 기업 수준의 미시적인 실증분석에 바탕을 둔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관련 이슈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거시적인 측면: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하준경(2004)은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경제이론들을 서베이하고 한국에 적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집약도가 지난 30여 년간 양적으로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변

본고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에 기초한 거시적인 측면과 기업 수준의 미시적인 실증분석에 바탕을 둔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화가 없었음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연구개발 집약도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선진국과의 기술 축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 효과에 의하여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및 미국의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1991~2000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의 GDP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장기균형 경제성장률이 0.16%p 늘어난 것에 비하여, 미국은 무려 2.75%p나 늘어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Freire-Seren(2001)은 연구개발에 기반한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물적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장기 성장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21개 OECD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지출 1%p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0.08%p 높여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미시적인 측면: 기업 수준에서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효과

서중해(2004)는 한국신용정보에서 제공하는 기업별 재무데이터와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행태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그 중 흥미로운 특징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과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정(+)이긴 하지만 매우 낮다는 점, 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의 차이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 등이다. 특히, 후자는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수행할 경우 고정비용에 가까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중해(2004)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추정의 근본적인 어려움 등이 여전히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개별 기업의 측면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권남훈·고상원(2004), 고상원·권남훈·이경남(2005), 오준병(2008) 등이 있다. 권남훈·고상원(2004)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들의 R&D 투자를 구축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송중국(2007)의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 기업 R&D를 줄이는 방향의 추정값을 얻었으나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감소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고상원·권남훈·이경남(2005)은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권남훈과 고상원(2004)에서 보다 더 연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러한 대체성이 특히 IT산업에서 두드러졌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분석은 전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던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금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을 일종의 treatment로 해석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를 전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국한시킴으로써 표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¹⁾.

한편, 오준병(2008)은 표본선택 편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단계 프로빗(Probit)을 이용하여 정부 보조금이 민간 R&D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즉, 첫 번째 단계의 이산적인 선택(binary choice)은 정부 보조금 수령과 관계되고, 두 번째 이산적인 선택(binary choice)은 정부 보조금 수령 후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것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떤 선택 편이가 의심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왜 위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2단계 프로빗 추정방법을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은 분석의 한계점으로 남는다²⁾.

여기서 한 가지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상술한 연구들 및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민간기업이 정부사업을 수행하여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경우 사업비 가운데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보조금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보조금은 주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상술한 연구들 및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정부재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보조금은 주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II. R&D 관련 정부 보조금 결정 행태 및 효과 추정

본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보조금 결정행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오준병(2008)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준병(2008)은 권남훈·고상원(2004)과 같이 전년도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당해년에 보조

1) 이는 보조금 수령의 평균적인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 왜곡을 줄 수 있다.

2) 결국, 오준병(2008)에 있어서 보다 의미있는 분석은 첫 번째 단계의 프로빗 추정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보조금 결정과 관련된 정부의 행태를 반영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 결정과 관련된 기업의 자기선택 문제를 고려하면서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금을 수령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효과를 분석하여 표본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수령이 가지고 있는 자기선택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 보조금의 수령은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로 배분되거나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진 기업에게 배분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보조금 결정과 관련된 기업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를 고려하면서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연구개발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용한 자료는 2003년~2007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민간기업 자료로 원 자료에서 5년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학교, 연구소, 기업을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고에서의 실증분석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저자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에서 기업의 특징에 관한 자료로는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두 자리 수준의 기업이 속한 업종, 자본금, 매출액, 총직원 수, 연구인력 수, 연구인력의 구성(박사, 석사, 학사, 연구지원 인력 수 등) 등이 있으며,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료로는 연구개발비와 그 구성(자체부담연구개발비, 정부로부터의 지입,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입 등), 지출 구성, 연구개발비가 사용된 연구의 성격(기초, 응용, 개발), 제품 관련(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연구개발비 지출, 공정 관련(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정보 등이 있다. 각 기업은 연구개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조달하기도 한다. 여기서 외부라 함은 정부 중앙부처, 지방정부, 국공립대학, 국공립시험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정부공공기관, 공공 기타비영리 기관, 사립대학, 민간의 동일 계열사, 민간 외부, 정부투자·재투자, 외국 정부 및 외국 업체 등을 의미한다. 분석에서 이용한 5년간의 약 15,000여개의 민간기업에 관한 기초 통계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초통계량

| 변 수 | 평 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정부재원 연구개발비(백만원) | 216.0 | 0.0 | 2234.4 |
| 기업조달 연구개발비(백만원) | 4892.2 | 377.0 | 85922.2 |
| 매출액(백만원) | 219265.6 | 10773.0 | 1627941.0 |
| 자본금(백만원) | 34331.4 | 1416.0 | 423634.4 |
| 연구인력비율(%) | 25.4 | 17.5 | 40.7 |
| 아웃소싱비율(%) | 18.0 | 0.0 | 188.6 |
| 비기초 R&D비율(%) | 92.0 | 100.0 | 17.2 |

분석의 목적은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정부재원이 어떤 기업들에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분석의 목적은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정부재원이 어떤 기업들에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추정모형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y_1 = \beta_1 y_2 + \gamma_1' x_1 - u_1 \tag{1}$$

$$y_2^* = \gamma_2' x_2 - u_2 \tag{2}$$

여기서 y_1 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조달한 연구개발투자액이며, y_2^* 는 기업의 정부 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은닉변수(latent variable)로 $y_2 = I(y_2^* > 0)$ 이다³⁾. $I(\cdot)$ 는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 되는 지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x_1 및 x_2 는 각각 기업연구개발투자 행위 및 정부 보조금 수령 결정과 관계가 있는 변수들의 벡터이다. u_1 및 u_2 는 독립적일 필요는 없으며, u_2 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⁴⁾.

식 (1)을 단순히 선형회귀를 이용하여 추정하면 u_2 와 관련된 교란항 u_2 로 인해 편의(bias)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목적은 식 (2)를 통해 정부 보조금 결정 행태에 대한 결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식 (1)을 통하여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주는 효과를 추정편의 없이 추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일치추정량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먼저 식 (1)을 다음과 같이 (1')으로 표현하여 OLS를 적용하는 것이다.

$$y_1 = \beta_1 \Phi_2(\gamma_2' x_2) + \gamma_1' x_1 + w, \tag{1'}$$

3) y_2^* 를 편의상 기업의 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효용이 양일 경우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며, 음인 경우에는 받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식 (1)을 활용하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수령이라는 선택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이다.
4) x_1 이 x_2 를 포함하는 경우도 모형 식별에는 문제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Maddala(1983) 참조하라. 그러나 이를 2SLS 입장으로 바라보면 x_2 가 x_1 및 기타 변수(z)를 포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자본금이 많을수록,
 총직원 대비 연구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관련
 아웃소싱 비중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구개발 가운데
 비기초연구(응용·개발연구)
 비중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w = -u_1 + \beta_2[y_2 - \Phi_2(\gamma_2'x_2)]$, $\Phi_2(\cdot)$, u_2 는 u_2 의 확률분포함수인 표준 정규분포 함수이다.

먼저 식 (2)를 프로빗 최우추정(probit ML)을 이용하여 일치추정량 $\hat{\gamma}$ 을 얻고 이를 식(1')에 넣어 OLS를 적용하면 β_1 및 γ_1 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R&D 정부 지원 결정과 관련된 식 (2)의 추정결과를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얻게 될 가능성은 자본금이 많을수록, 총직원 대비 연구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관련 아웃소싱 비중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구개발 가운데 비기초연구(응용·개발연구)비중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웃소싱 비중은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의미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학·의약품, 전자장비, 자동차, 선박·항공에 속한 기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추정결과로는 화학·의약품, 자동차, 선박·항공에서만 나타났다. 연도별 특징은 비교 대상인 2003년에 비해 모두 연구개발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식 (2)의 추정결과: 정부 보조금 결정식

| 설명변수 | 추정값 | 표준오차 | (t-value) |
|------------|---------|--------|-----------|
| 매출액 (로그) | -0.0817 | 0.0085 | -9.58 |
| 자본금 (로그) | 0.1013 | 0.0094 | 10.83 |
| 연구인력비율 | 0.7514 | 0.0304 | 24.72 |
| 아웃소싱비율 | -0.0003 | 0.0059 | -0.05 |
| 비기초 R&D 비율 | 0.3003 | 0.0655 | 4.59 |
| 2004년 | 0.0535 | 0.0336 | 1.59 |
| 2005년 | 0.0423 | 0.0336 | 1.26 |
| 2006년 | 0.0513 | 0.0335 | 1.53 |
| 2007년 | 0.0135 | 0.0337 | 0.40 |
| 화학·의약품 | 0.1439 | 0.0320 | 4.50 |
| 전자장비 | 0.0248 | 0.0314 | 0.79 |
| 자동차 | 0.1868 | 0.0502 | 3.72 |
| 선박·항공 | 0.4452 | 0.0937 | 4.75 |
| 전산·정보처리 | -0.2685 | 0.0370 | -7.26 |
| 상수 | -0.8792 | 0.0832 | -10.56 |

Log likelihood = -9553.368
 관측치수 = 15329

주: 2003년~2007년은 연도 더미변수이며, 화학·의약품, 전자장비(반도체·음향통신), 자동차, 선박항공, 전산·정보처리는 업종을 반영하는 더미변수이다.

이제 앞에서 얻은 정부 보조금의 결정행태를 반영한 식 (2)의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여기서 피설명 변수는 기업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연구개발투자액으로 기업 자신의 재원, 관련 모기업으로부터의 재원 조달, 차입 등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식 (1')을 추정한 결과,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자체조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는 β_1 은 의미있는 수준의 양수로 추정되었다. 즉,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추정결과를 보면, 매출액 및 자본금이 클수록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의 아웃소싱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비기초연구개발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별로는 기준연도인 200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던 데에 비해, 2007년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반적으로 수축되었던 국내경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및 자본금이
클수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식 (1')의 추정결과: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에 주는 효과

| 설명변수 | 추정값 | 표준오차 | (t-value) |
|------------|---------|--------|-----------|
| 프로빗 확률 추정값 | 3.5424 | 0.3404 | 10.41 |
| 매출액 (로그) | 0.5449 | 0.0107 | 50.94 |
| 자본금 (로그) | 0.0670 | 0.0145 | 4.84 |
| 연구인력비율 | 0.2062 | 0.1432 | 1.44 |
| 아웃소싱비율 | -0.0582 | 0.0166 | -3.50 |
| 비기초 R&D 비율 | -0.1046 | 0.0539 | -1.94 |
| 2004년 | -0.0675 | 0.0255 | -2.64 |
| 2005년 | -0.0900 | 0.0251 | -3.59 |
| 2006년 | -0.0088 | 0.0253 | -0.34 |
| 2007년 | 0.0616 | 0.0255 | 2.41 |
| 상수 | -0.7281 | 0.0816 | -8.92 |

$R^2 = 0.5804$

관측치 수 = 15329

주: 1) 2003년~2007년은 연도 더미변수, 2) 이분산성을 고려한 표준오차 이용

연구개발의 아웃소싱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비기초연구개발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상술한 추정이 비교적 강한 가정 - 식 (2)의 u_2 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 - 하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조건인 u_2 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여전히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한 대안으로 $\hat{y}_2 (= \hat{F}_2)$ 을 도구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⁵⁾. 이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에 보다 충실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정부 보조금 수령 더미를 $\hat{y}_2 (= \hat{F}_2)$ 와 x_2 에 선형회귀하여 얻은 추정값 \tilde{y}_2 을 활용하여 2단계에서 y_1 을 \tilde{y}_2 와 x_1 에 선형회귀하여 내생적인 더미변수의 계수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즉, $\hat{y}_2 (= \hat{F}_2)$ 의 비선형성을 일종의 도구변수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가정하에서 일치추정량을 구한다는 점이 상대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추정 결과 연구개발 관련 정부 보조금 수령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그 효과 정도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한 것보다 다소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타 설명변수의 부호도 앞의 추정 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완화된 가정하에서의 식 (1)의 추정결과

| 설명변수 | 추정값 | 표준오차 | (t-value) |
|----------------------------|---------|--------|-----------|
| 내생적 더미추정값(\tilde{y}_2) | 2.6713 | 0.1797 | 14.86 |
| 매출액(로그) | 0.5034 | 0.0092 | 54.73 |
| 자본금(로그) | 0.1078 | 0.0104 | 10.35 |
| 연구인력비율 | 0.1876 | 0.0884 | 2.12 |
| 아웃소싱비율 | -0.0588 | 0.0167 | -3.52 |
| 비기초R&D 비율 | -0.0059 | 0.0480 | -0.12 |
| 2004년 | -0.0471 | 0.0249 | -1.89 |
| 2005년 | -0.0721 | 0.0247 | -2.92 |
| 2006년 | 0.0121 | 0.0248 | 0.49 |
| 2007년 | 0.0731 | 0.0254 | 2.87 |
| 상수 | -0.4137 | 0.0744 | -5.56 |

$R^2 = 0.5860$

관측치 수 = 15329

주: 1) 2003년~2007년은 연도 더미변수
2) 이분산성을 고려한 표준오차 이용

5) 이러한 이유로 Jerry Hausman은 이러한 회귀분석을 Forbidden Regression이라 불렀고, 도구변수로서 프로빗 확률 추정값을 활용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회귀식을 수행하여 추정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정부 보조금 결정에 있어서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클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매출액이 작아질수록, 즉, 업황이 어려울수록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주로 경기에 역행하는 성격을 띠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자본금이 클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큰 표준오차를 보이고 있다. 총직원 가운데 연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만큼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개발 아웃소싱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업의 정부 지원 수혜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초R&D가 아닌 응용 및 개발 R&D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는 그 반대의 부호가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업종별 특징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화학·의약품, 자동차, 선박항공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장비, 자동차, 선박항공 업종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화학·의약품 업종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전자장비 및 전산·정보처리 업종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전산·정보처리 업종이 정부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산·정보처리 업종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개발 관련 정부 보조금 수혜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주는 영향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유의미하게 양수로 추정되어 정부 보조금 효과가 보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효과의 정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자본금이 클수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커지는 것으로, 연구인력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커지는 것으로 의미있게 추정되었다.

정부 보조금 결정식에서의 교란항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여 식 (1)을 재추정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모두 정부 보조금의 수령이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증진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의 크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 결정에 있어서 대기업의 경우 업황이 좋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업황이 어려울수록 정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관련
정부 보조금 수혜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주는 영향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유의미하게
양수로 추정되어 정부 지원
효과가 보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식 (2)의 추정결과 - 정부 보조금 결정식

| 설명변수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 |
|----------------|-----------|-------|-----------|-------|-----------|-------|
| | 추정값 | 표준오차 | 추정값 | 표준오차 | 추정값 | 표준오차 |
| 매출액 (로그) | 0.132 ** | 0.028 | -0.066 ** | 0.014 | -0.091 ** | 0.015 |
| 자본금 (로그) | 0.083 ** | 0.025 | 0.067 ** | 0.015 | 0.001 | 0.018 |
| 연구인력비율 | 0.940 ** | 0.272 | 0.154 ** | 0.035 | 0.738 ** | 0.080 |
| 아웃소싱비율 | -0.062 * | 0.033 | 0.003 | 0.008 | 0.069 ** | 0.022 |
| 비기초R&D비율 | 0.370 * | 0.219 | 0.334 ** | 0.089 | -0.019 | 0.120 |
| 2004년 | -0.039 | 0.095 | 0.093 * | 0.049 | 0.014 | 0.056 |
| 2005년 | -0.086 | 0.095 | 0.026 | 0.050 | 0.049 | 0.055 |
| 2006년 | 0.068 | 0.095 | 0.020 | 0.050 | 0.021 | 0.055 |
| 2007년 | 0.017 | 0.092 | -0.017 | 0.051 | -0.017 | 0.055 |
| 화학·의약품 | 0.616 ** | 0.081 | 0.063 | 0.046 | 0.211 ** | 0.061 |
| 전자장비 | -0.124 | 0.108 | 0.108 ** | 0.054 | 0.163 ** | 0.045 |
| 자동차 | 0.314 | 0.106 | 0.325 ** | 0.065 | -0.064 | 0.138 |
| 선박항공 | 0.389 ** | 0.184 | 0.501 ** | 0.139 | 0.260 | 0.189 |
| 전산·정보처리 | -0.104 | 0.178 | -0.230 ** | 0.071 | -0.517 ** | 0.047 |
| 상수 | -3.477 ** | 0.338 | -0.953 ** | 0.132 | 0.565 ** | 0.179 |
| Log likelihood | -1223.439 | | -4137.027 | | -3781.615 | |
| 관측치 수 | 2024 | | 7561 | | 5744 | |

주: 1) 2003년~2007년은 연도 더미변수이며, 화학·의약품, 전자장비(반도체·음향통신), 자동차, 선박항공, 전산·정보처리는 업종을 반영하는 더미변수이다.
2) ** 및 *는 각각 유의수준 1% 및 5% 수준에서 0과 의미있게 다른 경우.

〈표 6〉 식 (1)의 추정결과: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에 주는 효과

| 설명변수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 |
|----------------|-----------|-------|-----------|-------|----------|-------|
| | 추정값 | 표준오차 | 추정값 | 표준오차 | 추정값 | 표준오차 |
| 프로빗 확률 추정값 | 4.055 ** | 0.274 | 2.410 ** | 0.312 | 1.062 ** | 0.286 |
| 매출액 (로그) | 0.458 ** | 0.039 | 0.449 ** | 0.019 | 0.118 ** | 0.020 |
| 자본금 (로그) | -0.043 | 0.028 | 0.055 ** | 0.012 | 0.207 ** | 0.021 |
| 연구인력비율 | 0.067 | 0.095 | 0.312 | 0.237 | 0.467 ** | 0.139 |
| 아웃소싱비율 | -0.011 ** | 0.003 | -0.055 ** | 0.027 | 0.154 ** | 0.040 |
| 비기초R&D 비율 | 0.002 | 0.231 | -0.136 ** | 0.057 | -0.078 | 0.145 |
| 2004년 | 0.075 | 0.085 | -0.026 | 0.033 | -0.034 | 0.065 |
| 2005년 | 0.089 | 0.083 | -0.049 | 0.032 | -0.048 | 0.063 |
| 2006년 | -0.136 | 0.087 | 0.091 ** | 0.032 | 0.106 * | 0.064 |
| 2007년 | -0.030 | 0.087 | 0.135 ** | 0.033 | 0.209 ** | 0.066 |
| 상수 | 1.397 ** | 0.410 | 0.623 ** | 0.201 | 1.830 ** | 0.297 |
| R ² | 0.4692 | | 0.4053 | | 0.0885 | |
| 관측치 수 | 2024 | | 7561 | | 2821 | |

주: 1) 2003년~2007년은 연도 더미변수, 2) 이분산성을 고려한 표준오차 이용
3) ** 및 *는 각각 유의수준 1% 및 5% 수준에서 0과 의미있게 다른 경우

〈표 7〉 완화된 가정하에서의 식 (1)의 추정결과

| 설명변수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 |
|----------------------------|---------|------|---------|------|---------|------|
| | 추정값 | 표준오차 | 추정값 | 표준오차 | 추정값 | 표준오차 |
| 내생적 더미추정값(\tilde{y}_2) | 4.093** | .282 | 2.491** | .358 | 1.132** | .287 |
| 매출액(로그) | .456** | .038 | .446** | .015 | .121** | .020 |
| 자본금(로그) | -.049* | .028 | .053** | .012 | .207** | .021 |
| 연구인력비율 | .066 | .088 | .230 | .213 | .460** | .125 |
| 아웃소싱비율 | -.011** | .003 | -.055** | .027 | -.172** | .041 |
| 비기초R&D 비율 | .011 | .230 | -.136** | .061 | -.072 | .145 |
| 2004년 | .068 | .085 | -.028 | .033 | -.036 | .065 |
| 2005년 | .091 | .083 | -.048** | .032 | -.050 | .063 |
| 2006년 | -.145* | .086 | .093** | .032 | .104 | .064 |
| 2007년 | -.035 | .086 | .138** | .033 | .208** | .066 |
| 상수 | 1.462** | .410 | .663** | .155 | 1.770** | .295 |
| R^2 | 0.4739 | | 0.4097 | | 0.0899 | |
| 관측치 수 | 2024 | | 7561 | | 2821 | |

주: 1) 2003년~2007년은 연도 더미변수, 2) 이분산성을 고려한 표본오차 이용

3) ** 및 *는 각각 유의수준 1% 및 5% 수준에서 0과 다른 경우

연구개발 관련 정부 보조금 결정 행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 규모별로 추정해 보면 그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높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해당 기업들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2003~2007년 『연구개발활동보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정부 보조금 결정 행태와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를 고려한 정부 보조금 수령의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부 보조금 수령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표본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추정결과로부터 몇 가지 느낀 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개발 관련 정부 보조금 결정 행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 규모별로 추정해 보면 그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높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해당 기업들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당국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재원의 흐름을 프로젝트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재원의
흐름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프로젝트 관련 주무 부처뿐만이
아닌 자금의 이용자인 기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축적된다면 예산당국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효율적인
재원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자신의 경영난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편화된 경향이라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은 강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개발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실상파악 및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활동조사』상의 데이터만으로 매우 부족함을 언급하고 싶다. 현재의 연구개발통계는 프로젝트별이 아니라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간 집계 통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분석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조세감면 자료는 서베이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응답이 없고 응답조차 매우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조사기관에서도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특히, 각 기업의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의 특허 상황, 특허를 통해 얻고 있는 수입 등의 정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와 같이 부처 사업을 통해 예산이 직접 개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기금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관한 정보도 구분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예산당국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재원의 흐름을 프로젝트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재원의 흐름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프로젝트 관련 주무 부처뿐만이 아닌 자금의 이용자인 기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축적된다면 예산당국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효율적인 재원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R&D사업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운영하고 있는 데 상술한 점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의 한계 등으로 보유기술 등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적어도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을 저해하기보다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는데, 대학 및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은 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특히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은 장기적으로 큰 외부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러한 연구는 추후 별도로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KIP**

민간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적어도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을 저해하기보다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 문헌>

- 권남훈·고상원,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제10권, 2004
- 권남훈·고상원·이경남 『민간 IT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서중해,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 제28권, 2004, pp. 81~122
- 송종국,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 오준병, 『기업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보조금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 하준경,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mimeo, 2004
- Freire-Seren, M. J., “R&D-Expenditure in an Endogeneous Growth Model,” *Journal of Economics*, Vol.74, pp. 39~62, 2001
- Maddalla, G. S.,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공공정책포럼

■ 제1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개최됩니다.





2010년 공공기관 정책방향

제1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2010년 공공기관 정책방향
- 일 시 2010년 1월 20일(수) 07:30~09:30
- 장 소 서울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 찬
 - 08:00~08:05 인사말
 송대희 좌장(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35 주제 발표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 08:35~09:00 공공정책포럼 위원 소개
 - 09:00~09:25 자유토론
 - 09:20 정리 및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1월 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에서 「2010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I. 기초 강연 요약

이용걸/기획재정부 차관

공공정책 및 공공정책국이 국가 경제와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 축적과 평가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내 공공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공공정책포럼이 튼튼한 이론 배경 및 외부 네트워크 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2년간의 공공정책 추진성과, 2010년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설명 드리겠다.

지난 2년간 추진성과

하드웨어 측면에서 민간 수행 또는 경쟁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공공성으로 인해 존치가 필요한 기능은 경영효율화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대졸 초임 및 기존 직원 임금 인하 등 보수체계 합리화, 단체협약의 공시와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었다.

선진화 추진 노력을 통해 국민·공공기관 내 선진화 추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율적·능동적 선진화 추진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기능·인력의 합리적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를 통한 UAE 원전 수출 성공 등을 이루어 공공기관의 질적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11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선진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모두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의 속도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공공기관 정책방향

방만 경영의 개선, 자율책임경영의 확립, 기능의 선진화 추진으로 그동안 추진된 외형적 구조개혁 성과를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일류 공공기관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방만경영 개선

건전한 노사문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이면합의의 수시공시, 사후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임자 급여금지 및 복수노조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초기에 연착륙되도록 선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기관장 평가에 노사관계 선진화 비중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모범사례로 발표된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경우, 노조가 내부 임직원 중 상임이사 임명을 제청하는 인사권 침해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 동수의 정리해고위원회의 경영권 침해 조항도 삭제하였으며, 근무시간 외에 노조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기존 단협상 10건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였다.

과도한 복지도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해 나가겠다. 학자금 무상 지원의 용자 전환, 예산에서 지원되는 경조사비 폐지 등 과도한 복지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과도한 사내복지기금의 축소 및 수당의 정비 등을 통해 편법적인 임금 인상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는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투자 확대에 기인하나, 재정 및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경영평가 외에도 재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자율책임경영 확립

경영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 4개 시범 기관을 선정하여 자율경영계약을 통해 기관별 자율권 확대 내용을 확정하였다. 향후 실적을 평가해 자율권 연장, 기관장 인사, 직원 성과급 등과 연계함으로써 이행을 담보할 것이며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체제도 경제사회 여건의 변동과 기관간 특성 등을 감안해 개선해 나가겠다. 외국과 비교 가능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를 간소화하며 대표성 있는 공통계량지표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경영평가 체계의 구축, 평가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겠다.

성과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엄격한 성과관리 시스템으로의 정비를 유도하고 성과연봉 비중과 연봉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연봉제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지난해 연봉제를 도입한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연봉제 도입 이후 3급 팀장을 기준으로 최고 잘한 사람과 제일 못한 사람 간 최대 1,700만원의 연봉 차등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연봉제 도입은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유인이 되어, 내부경쟁과 성과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유연성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용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력순환시스템 개선,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능선진화 추진

공공기관의 기능 선진화를 위해 오늘 포럼을 개최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향후 센터가 정책 Agenda를 발굴하는 기능을 하고,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 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이다.

공공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도 지원하겠다. 과거와 달리 이제 공공기관은 민간수행이 어렵거나 민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에너지, 환경, 수자원 및 Smart Grid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강화된 역량으로 선점이 가능한 분야, 에너지·식량 안보 등 장기 국가전략 대응이 필요한 분야, 국내 수요 축소에 따라 개척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외 원조 활동과 연계, 해외 진출 및 자원 확보를 연계한 패키지형 전략의 활용, 민간과의 공동 진출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국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간 칸막이가 높아 변화 대응과 성과가 미흡하다. 이에 '출연연 발전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매월 공공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 공공기관, 관련 부처 공무원의 지혜가 활발히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II. 참석자 소개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임해중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국장) ▲정택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배용수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정덕모 (인천국제공항 부사장) ▲이일재 (수자원공사 부사장) ▲위성백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장) ▲김완희 (경원대 회계학과) ▲윤태범 (한국조세연구원)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강성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구자운 (인천항만공사 부사장) ▲강봉구 (한국마사회 부회장) ▲이승철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홍두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심혁운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홍중균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오재인 (단국대 경영학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기 (한국관광공사 경영본부장)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정건용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장) ▲노원상 (한국조폐공사 부사장)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우해영 (기획재정부 민영화과장) ▲이장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본부장) ▲위옥환 (한국방송공사 전무) ▲조성봉 (대한주택보증 기획본부장)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김지영 (한국조세연구원)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임종국 (한국가스공사 경영기획실장) ▲한건택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수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략경영본부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명호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배준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오철호 (승실대 행정학과) ▲서보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권흠삼 (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정찬기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김형수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장)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III. 자유 토론

송대희/좌장

1980년대 이후 지표를 만들고 평가단 구성과 실질 평가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를 해 왔다. 이 제도는 이제 지방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 구기관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포럼을 계기로 정책 및 평가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자 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G20 개최 등 세계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현 상 황에서,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변화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용걸/기획재정부 차관

297개 공공기관을 관리하다 보니 공공기관별 상황 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포럼 을 통해 공공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 리를 공공기관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 평가 측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포럼에서의 의견이 정책 에 적극 반영되도록 활성화되길 바란다.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국민간 성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소통의 문제 때문인지, 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파악하고 괴리를 없애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준정부기관 및 위원을 포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장우/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본부장

공공기관이 평가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현실을 진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희망한다.

조성일/중앙대 국제대학원

기존 평가에 있어 평가 위원의 임기 적절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관련 기본 지식의 축적·교육을 통해 평가위원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는 평가 시각의 전환 및 평가의 전문화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형식적인 혁신이 아니라 기관 내 자발적 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자발적 문화를 조화시켜야 한다.

오철호/송실대 행정학과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공공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의견 조사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최경규/동국대 경영학과

글로벌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UN의 GC(Global

Compact) 참여를 추천한다.

정택환/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

OECD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 분리를 넘어선 차별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민간기업과 같은 경쟁 환경을 적용하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조세·재정 등 사후적인 수단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성과 효율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배용수/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항의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해외 수출 등 장기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장의 평가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개별 기관의 상황을 반영하는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포럼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뤄볼 것을 건의한다.

강호인/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설립 목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추어 공공기관이 어떻게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있다. 공공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방만 경영 기관 때문에 언론·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재량권이 80% 이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체계화 시키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정책 포럼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재량권의 활용, 해외 진출 등 시장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겠다.

박정수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포럼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 자문을 맡아주실 전문가 30분을 모셨고, 공기업·준정부기관·금융공기업 등 관계자 분들을 순환하여 모실 것이다. 2월에는 국가 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며, 3월에는 SOC 관련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논의하려 한다. 2분기에는 포럼 참여자·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조찬 이외 자유로운 토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센터는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선도의 역할을 하고, 인센티브 측면에서 주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KIP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10-02

요약

-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2010年度 税制改正大綱’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안과 더불어서 신정권 하에서의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평·투명·납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함
 - 비용 분담을 중요시하며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함
 -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제 본연의 자세를 고려하고 지역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세제를 구축함
- 핀란드는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22%에서 23%로 인상할 계획임
- 영국 국세청(HMRC)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탈루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Tax Health Plan)를 발표함

1. 일본

- 정부는 12월 22일 201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정권하에서의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음
 -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평·투명·납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함
 - 비용 분담을 중요시하며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함
 -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제 본연의 자세를 고려하고 지역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세제를 구축함
- 각 세목별 개혁 방향 및 개정사항
 - 개인소득과세
 -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고 소득세 정상화를 위해 세율구조의 개혁,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환급세액공제, 수당으로의 전환 추진
 - 자녀수당의 신설과 함께 연소부양친족(15세 이하)에 대한 부양공제(38만엔)를 폐지하고 16~18세 자녀에 대한 추가부양공제(25만엔)를 폐지
 - 개인주민세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소부양친족(15세 이하)에 대한 부양공제(33만엔) 및 16~18세 자녀에 대한 추가부양공제(12만엔) 폐지



- 법인과세
 - 조세특별조치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과세베이스가 확대된 후에 성장전략과의 정합성이나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의 유지·향상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율을 재검토
 - 100% 그룹 내의 내국법인 간에 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의 과세 이연 등 자본 거래와 관련된 세제 정비
 -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업무주재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국제과세
 - 국제과세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과세·징수를 확보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화·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국외 진출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보다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합산세제에서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낮은 조세부담비율의 기준을 현재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인하
- 자산과세
 -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의 비과세 조치에 대해서 소득 제한을 부여하고, 현재 500만엔인 비과세한도액을 2010년은 1,500만엔, 2011년에는 1,000만엔으로 인상
- 소비과세
 -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및 경유인수세의 경우 원유가격 등의 안정적인 추이와 지구온난화대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의 세율 수준(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는 53,800엔/kl, 휘발유인수세는 32,000엔/kl)을 유지
 - 자동차중량세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에 의한 추가분의 약 2분의 1에 상당하는 규모의 세부담 경감을

- 실시
 - 담배세는 1개비당 3.5엔(국가, 지방 각 1.75엔)의 세율 인상(가격 상승은 5엔 정도)을 실시(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
- 주민공익세제
 - 인정NPO법인제도에 대해 인정수속과 신청서류 등의 간소화 실시
 -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 적용 하한 금액을 현재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 납세환경 정비
 - 납세자관리현장(가칭)의 제정, 국세불복심판소의 개혁, 사회보장·세금의 공통번호제도 도입, 세입청의 설치 등에 대해서 검토
 - 탈세범과 관련된 징역형의 상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국세 관련 벌칙도 재검토
-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 국가 정책세제 241개 항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2개 항목을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이 중 41개 항목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
 - 지방의 정책세제 조치인 286개 항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개 항목을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그 중 57개 항목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감축
- 조특투명화법(가칭)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실태를 분명히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에 「조특투명화 법안(가칭)」을 제출할 예정

2. 핀란드 부가가치세율 변동

- 2010 예산안(Budget Bill for 2010)에 의하면,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될 예정임

핀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 구 분 | 세율(%) | |
|-------------------------------|------------------|-----|
| | 현 행 | 개정안 |
| 표준세율 | 22 | 23 |
| 기초 식료품 및 동물사료 | 12 ¹⁾ | 13 |
|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 | 22 | 13 |
| 의약품, 서적, 문화행사, 대중교통, 호텔 서비스 등 | 8 | 9 |
| 신문 및 잡지 구독, 비영리단체의 회원 발간물 등 | 0 | 0 |

주: 1) 2009년 10월 1일 이전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됨

•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며, 미납부세액이 GBP 1,000 미만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 미신고시 제재

- 동 제도에 따라 탈루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전문가에 대해서는 10%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함¹⁾

- 대개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음

3. 영국 Tax Health Plan

■ 영국 국세청(HMRC)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탈루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Tax Health Plan)를 발표함

■ Tax Health Plan 상세

- 주 내용은 의료전문가가 기한 내에 특정 기간의 탈루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준다는 것임

• 신고대상 소득

- 2008년 4월 5일까지 기간 동안 탈루한 소득이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함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할 의사가 있음을 국세청에 통지하여야 함

-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탈루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부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1) 참고로, 영국에서 가산세액은 체납자의 제안 및 국세청의 수락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세청은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중대성, 체납자의 협조 등에 기초하여 체납자가 제안한 가산세액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함. 국세청은 미신고세액에 대해 100%까지 가산세를 매길 수 있으며, 특정 경우 가산세액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함



동향 10-03

요약

-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및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세 부과를 제안함
 -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감면법안에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을 인상한 소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세 부과법안에 따르면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은 부채의 0.15%에 해당하는 은행세를 납부해야 함
- 포르투갈 재무부는 2010년 1월 26일 2010예산안(Budget for 2010)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법인세 관련 최저한세 기준세율 인상(60% → 75%), 과세표준 간이 계산제도 폐지, 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구간 확대, 환경친화적 설비 및 차량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등임

1.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촉진법안 및 은행세 부과 제안

고용촉진법안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감면법안을 제안함
 - 이는 2010년 국정운영의 목표가 건강보험 개혁으로 부터 고용창출과 긴축재정으로 옮겨 갔음을 의미함
 - 새로운 조세감면법안에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을 인상한 소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약 1백만개의 소사업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약 330억달러의 조세 지출이 예상됨

- 백악관이 밝힌 구체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2010년의 순수한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1인당 5천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두 가지 세액공제의 합계는 고용주 1인당 50만달러로 제한됨
 - 한편 창업기업은 세액공제금액의 절반만 공제가 가능하며, 조세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둘 예정임
 -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부인하며, 재창업 후 새로운 이름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은행세 부과

-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4일, 긴급구제금융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대형은행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업계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이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이하 “은행세”)”를 거두겠다고 밝힘
 - 은행세는 2008년 금융위기시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금융

회사들로부터 공적자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 목적의 자산 보유를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은행세는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6월 30일 이후 시행됨

■ 백악관이 밝힌 은행세 부과방안에 따르면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은 부채의 0.15%에 해당하는 은행세를 납부해야 함

- 은행세의 과세대상은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유가증권 중개기관이나 부보예금기관, 은행, 저축은행지주회사,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임
- 은행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은 약 50개 정도로 추산되는바, 이 중 35개는 미국회사이고, 10~15개는 외국법인의 미국 내 자회사임
- 은행세는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또는 기타의 긴급안정화조치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은행세의 과세표준은 은행의 총자산에서 투기성격으로 볼 수 없는 안전자산(즉, Tier 1 자본금과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한 예금 등)을 차감해 계산함

■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해 2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은행세는 2010년 6월 30일부터 10년간(단, TARP의 원금상환일이 이보다 늦은 경우에는 원금상환일 까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는 향후 10년간 약 900억달러로 추산됨
- 은행세 부과로 조달된 세수는 TARP로부터 예상되

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계획임

2. 포르투갈 2010예산안(Budget for 2010)

■ 재무부는 2010년 1월 26일 2010예산안(Budget for 2010)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분야

- 최저한세 기준세율을 15%p 인상함
- 법인세 납부세액은 조세혜택 및 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의 75%(현 60%) 이상이어야 함
- 과세표준 간이계산제도(simplified regime)를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동 제도에 대해서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1) 표준장부 기장을 선택하지 않았고 (2) 직전연도 매출액이 EUR149,639.37을 초과하지 않으며 (3) 공인 장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간주소득에 기초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간주소득은 제품 및 상품 매출액의 20%에 기타 매출액의 45%와 EUR6,300 중 큰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는 20%의 저세율¹⁾로 과세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거주법인이 EU 회원국 내 소재한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 과세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1) 유럽경제협정(European Economic Agreement, EEA) 체결국에 소재한 법

1) 포르투갈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중 첫 EUR12,500에 대해서는 12.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고 있음



인, (2) 본점이 다른 EU 회원국 또는 EEA 체약국에 있는 EU 회원국 또는 EEA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를 적용함

-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EU 회원국 내 법인이 포르투갈 거주법인에 배분하는 이익에 대해 경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면제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1) EEA 체약국 내 거주법인이 배분하는 이익, (2) 본점이 EU 회원국 및 EEA 체약국에 있는 포르투갈 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를 적용함

■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 조정함

〈표 1〉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

| 과세표준 | | 세율(%) |
|-----------------|-----------------|-------|
| 현행 | 개정안 | |
| ~ 4,755 | ~ 4,793 | 10.5 |
| 4,755 ~ 7,192 | 4,793 ~ 7,250 | 13 |
| 7,192 ~ 17,836 | 7,250 ~ 17,979 | 23.5 |
| 17,836 ~ 41,021 | 17,979 ~ 41,349 | 34 |
| 41,021 ~ 59,450 | 41,349 ~ 59,926 | 36.5 |
| 59,450 ~ 64,110 | 59,926 ~ 64,623 | 40 |
| 64,110 ~ | 64,623 ~ | 42 |

- 연금소득(Category H income)에 적용되는 특별공제를 EUR30,000에서 EUR 30,240으로 인상함
- 2010년 장애인이 취득한 근로소득(Category A income),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 연금소득

(Category H income)은 과세되지 않음

- 과세면제 금액 한도는 각 소득유형별로 EUR2,500을 적용함
- 환경친화적 설비 및 차량 취득가액의 30%를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 계산시 공제함
- 이는 4년마다 적용이 가능하며, EUR803을 한도로 함
- 상금(prizes)에 대해 소득세 대신 인지세(Stamp Duty)를 과세함
- 현행 규정에서는 복권, 빙고게임 등으로 인한 상금은 25%, 콘테스트 및 대회 상금 등은 35%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상금에 대해 35%의 세율(빙고게임의 경우 25%를 적용)로 인지세를 과세하되,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부과함
- 미신고 국외보유자산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신설함
- 개인이 미신고 국외보유자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5%를 납부하면 미신고기간 동안의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이를 위해서는 신고 시점에 세무조사 중에 있어서는 아니 됨
- 사업소득 간이계산제도(simplified regime)²⁾ 요건을 간소화함
- 현행 규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EUR149,939,37 이하이고, 직전연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EUR99,759,58 이하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사업소득이 EUR150,000 이하인 경우 간이계산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간소화함

2) 간이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을 제품 및 상품 매출에 0.2, 기타 사업활동 소득에 0.7을 곱하여 계산함

정책 흐름



- 2009년 국세징수 실적
-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일부 유럽 국가 재정위험 관련 영향과 대응방향
- 근무조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180만원 지원
-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정책 흐름



- 2009년 국세징수 실적
-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일부 유럽 국가 재정위험 관련 영향과 대응방향
- 근무조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180만원 지원
-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2009년 국세징수 실적

* 본 자료는 2010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09년 국세징수 실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9년 국세수입 : 164조 5,407억원
【'08년 실적(167조 3,060억원) 대비】 △2.8조원 감소(△1.7%↓)
 ☞ '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위축과 '08년 추진한 감세정책 등에 기인
 *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 소득세율 인하, 근로자 인적공제 확대 등, 근로장려금 지급,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 2%p), 대중교통 물류 유가보조금 지급,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지원 확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등
【'09년 예산(164조 17억원) 대비】 0.5조원 초과 (0.3%↑)
 ☞ '09. 4월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예산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09년 하반기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입 초과

- '08년 실적 대비 주요 증감요인
 - (증가세목)
 - 부가가치세(+3.2조원) '09년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
 - 증권거래세(+0.7조원) 주식시장 회복 등
 - 관세(0.4조원) 환율 상승, 할당관세 품목 폐지·축소 등
 - (감소세목)
 - 소득세(△2.0조원) 소득세율 인하, 고용 부진 등
 - 법인세(△3.9조원) '08년 하반기 경기침체 및 법인세율 인하 등
 - 종합부동산세(△0.9조원) 주택·토지의 공시가 격 하락 등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 구분 | '08실적 | 2009년 | | '08 실적 대비 | | '09 예산 대비 | |
|----------|-------|-------|-------|-----------|---------|-----------|---------|
| | | 예산 | 실적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총국세 | 167.3 | 164.0 | 164.5 | △2.8 | (△1.7) | 0.5 | (0.3) |
| • 소득세 | 36.4 | 36.3 | 34.4 | △2.0 | (△5.3) | △1.9 | (△5.1) |
| • 법인세 | 39.2 | 32.2 | 35.3 | △3.9 | (△10.0) | 3.1 | (9.4) |
| • 부가가치세 | 43.8 | 45.6 | 47.0 | 3.2 | (7.2) | 1.4 | (3.0) |
| • 관세 | 8.8 | 9.0 | 9.2 | 0.4 | (4.5) | 0.2 | (2.3) |
| • 종합부동산세 | 2.1 | 1.5 | 1.2 | △0.9 | (△43.3) | △0.3 | (△18.9) |

- '09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요인
 - (증가세목)
 - 법인세(+3.1조원) '09년 경기가 추경예산 편성시 전망* 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경상성장률 : (추경예산 편성시 전망) 0.5% → (실적) 3.5%
 - 부가가치세(+1.4조원) '09년 본격적인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
 - (감소세목)
 - 소득세(△1.9조원) 고용 부진, 명목임금상승률 정체 등

- 상속증여세(△1.4조원) 토지·건물가격 하락에 따른 증여가액 감소 등
- 종합부동산세(△0.3조원)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 등

I. 2009년 세입 개관

- 2009년 총국세 규모는 164조 5,407억원으로,
 - 2008년 국세실적(167조 3,060억원) 대비 △1.7%(△2조 7,653억원) 감소

(단위: 조원, %)

| 구분 | '08년 실적 | '09년 | | '08년 실적 대비 | | '09년 예산 대비 | |
|------|---------|-------|-------|------------|--------|------------|--------|
| | | 예산 | 실적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총국세 | 167.3 | 164.0 | 164.5 | △2.8 | (△1.7) | 0.5 | (0.3) |
| 일반회계 | 160.7 | 157.3 | 157.9 | △2.8 | (△1.7) | 0.6 | (0.4) |
| 특별회계 | 6.6 | 6.7 | 6.6 | - | (0.4) | △0.1 | (△0.8) |

1. 회계별 증감 사유

- **(일반회계)** 157.9조원으로 2008년 실적(160.7조원) 대비 △1.7% (△2.8조원 ↓) 감소
 - 민간소비 증가(3.0%)로 부가가치세(3.2조원 ↑), '08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납세유예(2.6조원)로 과년도수입(3.1조원 ↑), 주식시장 회복으로 증권거래세(0.7조원 ↑) 등 증가
 - 반면, 소득·법인세율 인하, '08년 경기침체 등으로 소득세(△2.0조원 ↓), 법인세(△3.9조원 ↓) 감소
- **(특별회계)** 특별회계인 주세·농특세는 각각 2.8조원, 3.8조원으로서 2009년 실적과 유사

2.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 (전년 대비)

증가세목

① 부가가치세 : 3.2조원 증가

- '09년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납부세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감소한 데 기인
 - * '09년 실질 경제성장률 : ('09년) 0.2% (3/4분기 0.9%, 4/4분기 6.0%)
 - *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 ('09년) 3.0% (3/4분기 3.1%, 4/4분기 8.1%)
 - * 수입금액(수입액×환율) : ('08년) 480조원 → ('09년) 412조원 (△14.2% ↓)
 - * 명목 설비투자 증가율 : ('08년) 3.6% → ('09년) △7.6%

② 증권거래세 : 0.7조원 증가

- '09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의 증가에 기인
 - * 주식 거래대금 : ('08년) 1,603조원 → ('09년) 1,927조원 (20.2% ↑)

③ 관세 : 0.4조원 증가

- 수입액은 감소하였으나, 환율 상승, 할당관세 세율 인상¹⁾ 품목 축소²⁾ 등에 기인
 - * 수입액(억달러) : ('08년) 4,353 → ('09년) 3,228 (△25.9% ↓)
 - * 환율(원/\$) : ('08년) 1,103 → ('09년) 1,276 (15.7% ↑)
 - * 1) '09년 3월부터 원유 관세율 1% → 3%로 환원(세수효과 : +0.5조원)
 - * 2) '09, 7월부터 할당관세 품목 축소(세수효과 : +0.3조원)

④ 과년도수입 : 3.1조원 증가

- '08년 말 경제위기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한 부가세 등 납기연장 금액(2.6조원)이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되고, 체납액 징수 노력 등에 기인

감소세목

① 소득세 : △2.0조원 감소

-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1.8조원), 고용 부진(근로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양도소득세) 등에 기인

* 취업자 수(천명) : ('08년) 23,577 → ('09년) 23,530 (△0.2% ↓)

* 토지 거래량(천필지) : ('08년) 2,659 → ('09년) 2,295 (△13.7%)

* 건물 거래건수(천건) : ('08년) 1,586 → ('09년) 1,340 (△16.0%)

② 법인세 : △3.9조원 감소

- '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의 당기순이익 감소 및 세율인하 등에 기인

* 흑자법인 당기순이익(조원) : ('07년 결산) 61.9 → ('08년 결산) 52.1 (△16.4% ↓)

* 법인세 종결정세액(조원) : ('08년) 32.6 → ('09년) 30.3 (△6.9% ↓)

* 법인세율 인하효과 : △2.5조원

③ 상속증여세 : △0.4조원 감소

- 국회 계류중인 증여세율 인하 법안 통과 기대심리에 따른 증여건수 감소, 토지·건물가격 하락에 따른 상속·증여 과세가액 감소 등에 기인

* 증여건수(천) : ('08년) 97,277 → ('09년) 96,654 (△0.6% ↓)

* 증여세 과세가액(조원) : ('08년) 13.7 → ('09년) 10.4조원 (△24.1% ↓)

④ 개별소비세·교통세 : △2.7조원 감소

- 경기침체에 따른 LNG, 증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 감소, 일부 과세대상(자동차, 과세유흥장소)의 분기별 납부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

* LNG(천톤) : ('08년) 26,647 → ('09년) 23,856 (△10.5% ↓)

* 증유(천kl) : ('08년) 11,429 → ('09년) 11,077 (△3.1% ↓)

* 경유 판매량(천kl) : ('08년) 21,350 → ('09년) 21,176 (△0.8%)

⑤ 종합부동산세 : △0.9조원 감소

-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토지에 대한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에 기인

* 주택 공시가격 증감률 : ('08년) 2.8% → ('09년) △4.1%

* 토지 공시가격 증감률 : ('08년) 10.1% → ('09년) △0.8%

II.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조원, %)

| 구분 | '08년 실적 | 2009년 | | '08 실적 대비 | | '09년 예산 대비 | |
|----------|---------|-------|-------|-----------|---------|------------|---------|
| | | 예산 | 실적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총국세 | 167.3 | 164.0 | 164.5 | △2.8 | (△1.7) | 0.5 | (0.3) |
| • 소득세 | 36.4 | 36.3 | 34.4 | △2.0 | (△5.3) | △1.9 | (△5.1) |
| • 법인세 | 39.2 | 32.2 | 35.3 | △3.9 | (△10.0) | 3.1 | (9.4) |
| • 상속증여세 | 2.8 | 3.8 | 2.4 | △0.4 | (△12.5) | △1.4 | (△35.3) |
| • 부가가치세 | 43.8 | 45.6 | 47.0 | 3.2 | (7.2) | 1.4 | (3.0) |
| • 개별소비세 | 4.5 | 4.4 | 3.6 | △0.9 | (△19.1) | △0.8 | (△17.5) |
| • 증권거래세 | 2.8 | 3.3 | 3.5 | 0.7 | (26.8) | 0.2 | (8.4) |
| • 인지세 | 0.6 | 0.6 | 0.5 | △0.1 | (△5.1) | △0.1 | (△14.1) |
| • 과년도수입 | 3.8 | 4.2 | 6.9 | 3.1 | (83.3) | 2.7 | (65.2) |
| • 교통세 | 11.9 | 12.2 | 10.1 | △1.8 | (△15.3) | △2.1 | (△17.5) |
| • 관세 | 8.8 | 9.0 | 9.2 | 0.4 | (4.5) | 0.2 | (2.3) |
| • 교육세 | 4.2 | 4.3 | 3.8 | △0.4 | (△10.2) | △0.5 | (△12.6) |
| • 종합부동산세 | 2.1 | 1.5 | 1.2 | △0.9 | (△43.3) | △0.3 | (△18.9) |
| • 주세 | 2.8 | 2.6 | 2.8 | 0.0 | (△2.1) | 0.2 | (4.8) |
| • 농특세 | 3.8 | 4.0 | 3.8 | 0.0 | (2.3) | △0.2 | (△4.4) |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지난해 정부의 수입 · 지출 및 출납 잔액 확정 –

* 본 자료는 2010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 결산과에서 발표한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 10(수) 15:00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하복동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 지난해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총세입 · 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이 261.3조원, 총세출이 252.2조원으로 결산상잉여금 9.2조원 중 2.7조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총 6.5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의 세입은 204.9조원으로 예산액 203.5조원 대비 1.4조원(국세수입이 +0.6조원, 세외수입이 +0.8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5.1조원* 대비 97.4%인 199.9조원임

* 예산현액(205.1조원) = 예산액(203.5조원) + 전년도 이월액(1.5조원) + 초과지출승인액(0.1조원)
 - 특별회계의 세입은 56.4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 1.4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0.7조원 증가 등으로 예산액 53.0조원 대비 3.4조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4.9조원* 대비 95.3%인 52.3조원임

* 예산현액(54.9조원) = 예산액(53.0조원) + 전년도 이월액(1.2조원) + 초과지출승인액(0.6조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0.1조원)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6.5조원은 일반회계에서 3.6조원, 특별회계에서 2.9조원이 발생하였으며,
 -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정부는 총세입 · 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 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일부 유럽 국가 재정위험 관련 영향과 대응방향

* 본 자료는 2010년 2월 7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에서 발표한 「일부 유럽 국가 재정위험 관련 영향과 대응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가
- 2,3일 EU 집행위는 그리스가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계획*' 을 승인하였으나, 그리스 공기업 노조가 이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고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시현
- * 공공부문 임금 동결, 정부지출 축소 등을 통해 금년 내 재정 적자를 GDP의 8.7%까지 감축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추가】 2.4일 유럽 및 미국 증시는 급락, 이후(2.5일)에 유럽* 및 아시아** 증시는 2~3% 급락하였으나 미국은 반등(장 초반 △1.7%대 → 0.1%)

* 유럽 증시(2.5일, %): 영국(△1.5), 독일(△1.8), 그리스(△ 3.7), 포르투갈(△1.3), 이탈리아(△2.8), 아일랜드(△2.1), 스페인(△1.4)

** 아시아 증시(2.5일, %): 중국(△1.8), 일본(△2.8)
- 국내 증시도 외국인인 매도 등 전반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2.5일 3% 하락

주요국 주가 동향()안은 전일비 증감률(%)

| | 2.3(水) | 2.4(木) | 2.5(金) |
|----------|----------|------------------|-----------------|
| 美 Dow | 10,270.5 | 10,002.1 (△2.61) | 10,012.2 (0.1) |
| 英 FTSE | 5,253.1 | 5,139.3 (△2.17) | 5,060.9 (△1.53) |
| 그리스 | 2,018.9 | 1,951.7 (△3.33) | 1,878.9 (△3.73) |
| 포르투갈 | 7,832.86 | 7,442.9 (△4.98) | 7,341.5 (△1.36) |
| 日 Nikkei | 10,404.3 | 10,355.9 (△0.46) | 10057.0 (△2.89) |
| 中 상하이 | 3,003.8 | 2,995.3 (△0.28) | 2,932.4 (△1.87) |
| 한국 | 1,615.0 | 1,616.4 (+0.09) | 1,567.1(△3.05) |

【환율】 美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 및 유럽 불안 등으로 급등한 반면, 유로화 및 원화는 약세 시현

*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작년 5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유로/달러, bloomberg : 2.3일 1.3893 → 2.4일 1.3723 → 2.5일 1.3678)

* 달러/원 환율은 1,169원까지 상승하며 약세를 시현(2.4일 1,150.9원 → 2.5일 1,169.9)

- 2.5일 서울 외환시장 마감 이후 달러/원 환율은 역외에서 한때 1,185원까지 상승(2.5일 증가 대비 15.1원 상승)하였으나, 이후 美 주가 상승 반전으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1,172원대로 마감

【CDS 프리미엄】 2.5일 현재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아시아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

* 그리스(408bp, Δ20bp), 포르투갈(227bp, Δ3bp), 스페인(167bp, Δ4bp), 영국(97bp, Δ4bp)
 ** 일본(89bp, +5bp), 중국(90bp, +3bp), 한국(125bp, +6bp), 태국(129bp, +12bp)

2. 주요국 및 유럽중앙은행 반응

- 그리스, 스페인 등은 재정감축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그리스 총리(Papandreou)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성실히 추진할 것으로 약속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지는 않는다고 발언
 - *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익명의 IMF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그리스의 구제에 필요한 자금이 200억~2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
 - 스페인 총리(Zapatero)는 2.5일 실업률 축소 및 재정적자 개선 등을 위한 노동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회원국 모두 유로화 방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
- 유럽중앙은행 총재(Trichet)는 2.5~6일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가 새로운 긴축 목표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강조

PIIGS¹⁾의 '09년 주요 지표(EU 집행위, 09. 11월)

| | 국가 | 재정수지 ²⁾ | 국가부채 ²⁾ | 경상수지 ²⁾ | 총저축 ²⁾ | 노동비용상승률 (%, 05~09 평균) | GDP규모 (08년, 억불) |
|-----------------------|------|--------------------|--------------------|--------------------|-------------------|--------------------------|--------------------|
| P I I G S | 포르투갈 | Δ9.3 | 77.4 | Δ10.2 | 8.1 | 3.0 | 2,445 |
| | 이탈리아 | Δ5.3 | 114.6 | Δ2.4 | 16.7 | 2.9 | 23,139 |
| | 아일랜드 | Δ12.5 | 65.8 | Δ3.1 | 12.4 | 3.6 | 2,733 |
| | 그리스 | Δ12.7 | 112.6 | Δ8.8 | 7.7 | 2.7 | 3,575 |
| | 스페인 | Δ11.2 | 54.3 | Δ5.4 | 19.1 | 3.1 | 16,118 |
| | 독일 | Δ3.4 | 73.1 | 4.0 | 21.5 | 0.9 | 36,675 |
| | 유로지역 | Δ6.9 | 73.0 | Δ0.7 | 17.7 | 2.5 | 109,007 |

1) PIIGS : 시장에서는 재정여건이 취약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머리글자를 따서 PIIGS로 칭하며,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PIIGS로 부름
 2) GDP 대비 비중

3.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가장 취약한 그리스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3.8억달러('09. 9월)로 전체 익스포저 534억달러의 0.72% 수준에 불과
 - * 서남유럽국가들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는 전체익스포저 대비 비율) : 그리스(3.8억달러, 0.72%), 스페인(0.6억달러, 0.11%), 이탈리아(1.9억달러, 0.36%), 포르투갈(0.2억달러, 0.04%)
- 만약 그리스의 어려움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럽 국가로 파급될 경우 유로존 및 국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달리 재정 상황이 건전한 수준*인 만큼 서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로 인한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 '0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는 각각 Δ2.3%, 35.6% 수준으로 EU회원국들의 Δ6.9%, 73% 보다 훨씬 낮은 수준
 - ** S&P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ダイナミック한 경제를 강점이라고 평가('10. 1월)
 -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09년 426억불) 및 충분한 외환보유액('10. 1월 2,736억불) 등을 감안할 때도 외부충격에 대응 가능

4.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및 주요국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상 징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악·대응

- 또한 신용평가사, 국내외 언론 및 해외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금융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불안심리 조성을 사전에 방지

근무조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180만원 지원

* 본 자료는 201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행안부, 중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0년 2월 5일(금) 오전 8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1.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발표하였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지원 내용·요건 및 시행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임

- 정부는 이번 지원조치들을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고용증대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구인·구직 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취업 지원

- 노동부에 '구인·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
-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찾아다니면서 적극 발굴하여 전산화하고,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 기준 완화,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 구인수요도 집중 발굴
- 취업애로계층과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

② 고용중개기관 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들의 정보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체 투자가 어려운 실정

- 이에 정부가 인정한 우수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취업정보 등 제공)의 공공 DB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고,
- 고용서비스 협회에 민간고용중개기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
- 2월 말까지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완료 추진

③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취업애로계층과 중소기업 DB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 정부가 의뢰하는 취업애로층을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취업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고용중개기관을 육성할 계획
-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 취업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수요, 능력 및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하는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
-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2월 말)된 이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 추진

④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 구직자 등에게 장기·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하여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을 완화
-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

• '10. 1월부터 생계비를 대부받는 교육훈련자를 대상으로 지원(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⑤ **취업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 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 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무 유인을 제고

* 중소기업 빈 일자리 :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알선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사업주 제시 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 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 2. 12일 이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⑥ **전문 인턴제 실시**

-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가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자의 참여가 많은 점을 보완하여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인턴제도' 를 도입
- 금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 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인턴 채용 추진
- 이를 위해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자(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을 없애고,
- 대기업이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

개월간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

• 2. 12일 이후 전문인턴제 사업 개시

⑦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처음 6개월간은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
- 2. 12일 이후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지원

⑧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걸쳐서,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적발시 세법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

⑨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
-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접수·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
- 정책자금 금리우대는 오늘(2. 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

⑩ **고용확대 노력 우수 지자체 교부금 배분 우대**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하여,

- 우수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

■ 금번 대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1천억원 내외로 예상

- 향후 사업별 집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인턴제 실시 306억원, 기타 고용중개기관 지원 및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등에 1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할 계획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 본 자료는 2010년 2월 4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금년들어 환율·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미국 등의 정책에 변화조짐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모습
 ⇨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및 정책대응 기초를 점검

I. 최근 대외여건 변화 점검

1. 세계경제 동향

- ① **(최근 동향)**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미국·일본·유로지역 등 선진국들은 '09. 2/4 ~ 3/4분기 이후 전기비(+) 성장률을 이어가는 등 경기 개선추세 지속
 - 다만, 미국·유로지역의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등 고용의 회복이 더딘 모습
 - 중국은 내수·수출 동반 호조로 '09. 4/4분기 중 예상보다 높은 성장(10.7%)을 보였으나, 물가·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 노정

주요국 GDP 성장률(%)

| | '08. 4/4 | '09. 1/4 | 2/4 | 3/4 | 4/4 |
|------------|----------|----------|------|-----|------|
| 미국 (전기비연율) | △5.4 | △6.4 | △0.7 | 2.2 | 5.7 |
| 유로 (전기비) | △1.9 | △2.4 | △0.2 | 0.4 | - |
| 일본 (전기비) | △2.7 | △3.1 | 0.7 | 0.3 | - |
| 중국 (전년동기비) | 6.8 | 6.1 | 7.9 | 8.9 | 10.7 |

- ② **(향후 전망)** IMF·세계은행은 최근 2010년 세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회복흐름 지속 예상
- *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 ('09. 9월) 3.1 → (10. 1월) 3.9
 - 세계은행 : ('09. 3월) 2.3 → (10. 1월) 2.7
- 다만, 최근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미국의 금융 규제 강화, 유럽 신용불안 우려 등에 따른 하방위험 요인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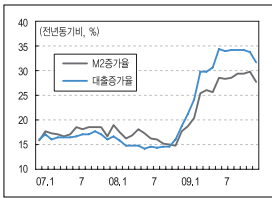
2. 주요국 정책동향

◇ 주요국의 정책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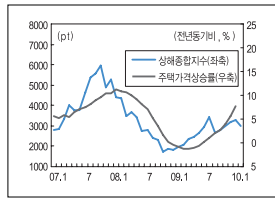
1. 중국

- ① **(배경)** 유동성 급증 등으로 '09년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주가는 '09년 중 8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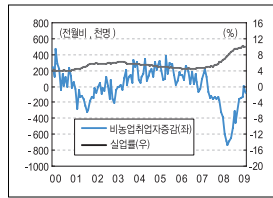
총통화 및 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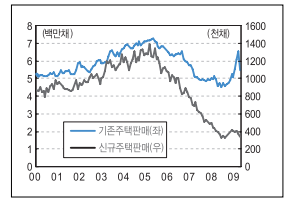
자산가격 추이



비농업취업자 수 증감 및 실업률



주택 판매량



② **(정책동향)** 재정정책은 4조위안의 부양책을 지속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자동차 보조금을 연장('10. 5 말 → 연말)하는 등 확장기조 유지

- 통화정책은 자산버블 ·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1. 18일, +0.5%p)하는 등 유동성 관리 조치 시행

③ **(국내영향)**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對中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책은 보조금 시한 연장, 대상제품 가격한도 인상 등으로 최근 더욱 강화
 - 중국이 적절한 정책전환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예방하고 안정 성장을 지속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
- 다만, 물가 · 자산인플레이가 원활히 수속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 소지에 따른 중국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경제에도 영향 우려

2. 미국

① **(배경)** 성장속도('09. 4분기 연율 5.7%)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비농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부진이 점차 완화

- 주택판매는 세제혜택 종료(당초 '09. 11 말 예정 → '10. 4 말로 연장)로 '09. 12월 중 일시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회복흐름 지속

② **(정책동향)** 재정정책은 2011년 이후 3년간 재량적 재정지출(4,770억달러, 총예산의 17%)을 동결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2. 1일)

- 통화정책은 유동성 흡수를 위한 방안*들이 발표되었고, 은행 영업규제 등 금융규제 강화 방안**도 제시

* 중앙은행 예치금 창구 개설, MBS · 기관채권 매입프로그램 '10. 3월 종료 등

** 규제금융을 받은 기관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안, 은행영업규제 인(해지펀드설립 · 자기거래 금지, 영업규모 제한) 등

③ **(국내영향)** 금융규제 방안 등은 아직 검토 · 논의 중인 단계로서 단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 다만, 실제 시행시 글로벌 유동성 위축 등으로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3. 유럽 · 일본

① **(유럽)** 경기회복시까지 부양책을 지속할 계획이나, 재정적자가 큰 그리스 · 스페인 · 포르투갈 등은 재정지출 감축계획을 발표('10. 1. 29)

② **(일본)** 디플레이 선언('09. 11. 20) 이후 10조엔(GDP의 2.1%)의 추가유동성 공급(12. 1), 7.2조엔(GDP의 1.5%)의 긴급경제대책(12. 8) 등 확장기조 강화

참고 1 주요국의 출구전략 추진 현황

1. 정책금리 인상

- ① **(이스라엘)** 빠른 경기회복('09. 2분기 연율 1%), 물가 상승('09. 7월 3.6%) 등으로 '09. 8월 이후 3차에 걸쳐 75bp 인상(0.50 → 1.25%)
- ② **(호주)** 양호한 경제성장('09년중 0.8% 예상), 물가·자산시장 불안 우려('09. 3분기중 주택가격 4.2% 상승) 등으로 '09.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총 75bp 인상(3.00 → 3.75%)
- ③ **(노르웨이)**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09. 10월 이후 2차에 걸쳐 50bp 인상(1.25 → 1.75%)

2. 기준율 인상 등 유동성 조절

- ① **(중국)** 빠른 경기회복('09. 4분기 10.7% 성장), 자산 버블 우려('09. 11월 주택가격 5.7% 상승) 등에 따라 은행 기준율을 인상('10. 1. 18일)
 - '09. 3분기부터 재개한 중앙은행 채권발행 금리도 수차례 인상
 - * 기준율 인상 내역(%) : (대형은행)15.5 → 16.0 (중소형은행)13.5 → 14.0
 - * 중앙은행채권 1년물 금리(%) : 1.76 → 1.84('10. 1. 12일) → 1.93('1. 20일)

- ② **(인도)** 인플레이 우려('09. 12월 도매물가 7.3% 상승) 등으로 은행 기준율을 인상(5.00 → 5.75%, '10. 1. 29일)

3. 주요 선진국 :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 움직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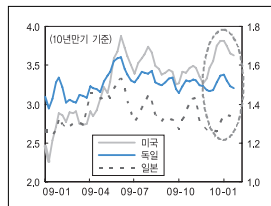
- ① **(미국)** 예외적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계획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임을 확인('10. 1. 27일)
 - * Fannie Mae 등의 MBS·부채 매입, 상업용MBS 담보대출 등은 3월 말 종료,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는 6월 말 종료
- ② **(유럽·일본)** 통화완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플레이 선언 이후 완화기조를 강화

3. 국제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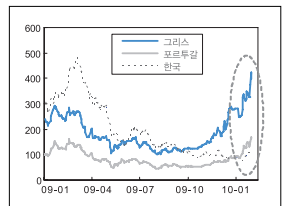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안정화 정책, 미국의 금융규제 움직임, 유럽 신용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CDS 프리미엄 상승, 주가 하락, 글로벌 달러 강세 시현

- ① **(금리)**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흐름을 보여 왔으나,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 하락
 -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등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

주요국 국채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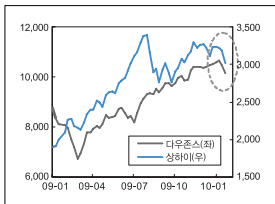
주요국 국채 CDS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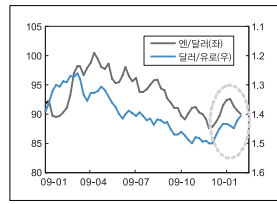
②(주가) 그간 회복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 등으로 '09년 말 대비 하락

③(환율) 유럽 신용불안 우려로 '09. 12월 이후 달러 강세(유로약세)로 전환되었고, 인화는 유로화 대체투자 수요 등으로 강세

주요국 주가



주요 환율



참고 2 최근 유럽의 신용불안 원인 및 전망

1. 정책금리 인상

①(원인)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적자 및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인해 유럽의 신용불안 우려가 고조

①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PIIGS) 등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국가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이 하락

* 그리스 : (Fitch)A → BBB+(09. 12월), 스페인 : (S&P)stable → negative(09. 12월) 포르투갈 : (Fitch, S&P, Moody's) 부정적 관찰대상 등재(09. 10~12월)

- 1. 28일 그리스 등의 09년 재정적자 규모*가 08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 경신

* 재정적자(08 → '09, GDP 대비 %) : (그리스)7.8 → 12.7 (포르투갈) 2.8 →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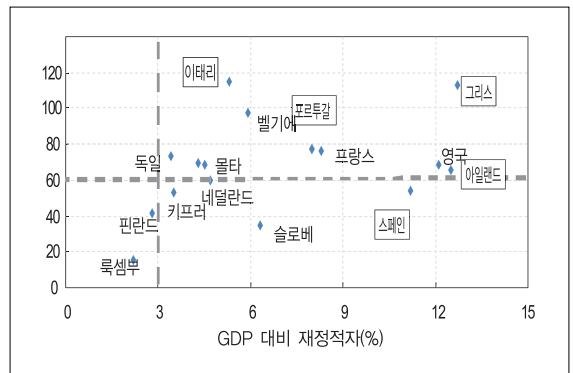
* CDS프리미엄(09말 → 1. 28일, bp) : (그리스) 283 → 422 (포르투갈) 92 → 169

② S&P는 경기 둔화와 대출 감소에 따른 은행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1. 28일)

②(전망) 재정적자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유로지역의 신용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대부분의 EU국가들이 재정건전성 기준(GDP 대비 재정적자 3% 이하, 국가채무 60% 이하)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성장회복 속도도 느려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



자료: EU 집행위 '09년 전망(09. 10월)

- ECB의 출구전략이 시작될 경우, 고부채 국가들의 차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

4. 국제유가

①(최근 동향)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70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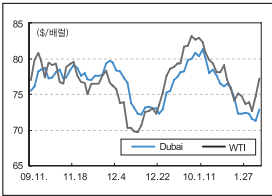
* Dubai유(\$/B) : (09. 12. 15) 72.2 (12. 31) 78.0 (10. 1. 11) 81.4 (2. 2) 72.9

- 작년말 유가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경기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美 석유재고 감소*, 동절기 한파**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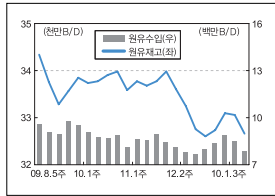
* 소비부진에 따른 수입감소, 일시적 난방용 수요 증가 등이 주된 원인

** '09.12월 미국·유럽의 난방용 석유수요가 26.5만B/D 증가(PIRA)
 • 1월 중순 들어서는 中 기준을 인상, 美 석유재고 증가,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80달러 아래로 하락

최근 국제유가 동향



美 석유재고 및 수입 동향



② (향후 전망) 석유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70~80달러대 초반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

• OECD 석유수요는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美 정유설비 가동률도 하락

* OECD 석유수요(전년동월비, %) : ('09. 9)△2.2 (10)△3.3 (11)△3.4 (12)△2.5

美 정유설비 가동률(%) : (09. 7) 85.9 → (10. 1) 79.5

• 다만, 투기자금 유입, 달러가치 움직임 등에 따른 변동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원유선물 순매수포지션(천B) : ('09. 12, 3주) 53,192 → (10. 1. 4 주) 99,620

II. 국내경제 동향

1. 시장 동향

① (금융시장) 안정세를 보여오던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이후 변동성 확대

• 주가는 연초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1. 21), 외국인

순매도 전환 등의 영향으로 하락

종합주가지수(p) 및 외국인 순매수

(단위: 조원)

| | '08. 12 | '09. 9 | 10 | 11 | 12 | '10. 1.1~21 | 1. 22~2.3 |
|--------------|---------|--------|-------|-------|-------|-------------|-----------|
| KOSPI(기간 말) | 1,124 | 1,673 | 1,581 | 1,550 | 1,682 | 1,722 | 1,615 |
| 외국인순매수(기간 중) | 0.9 | 4.8 | 1.5 | 1.8 | 2.3 | 1.7 | △1.0 |

• 금리는 상승 기대감이 완화되면서 국고채 금리를 중심으로 안정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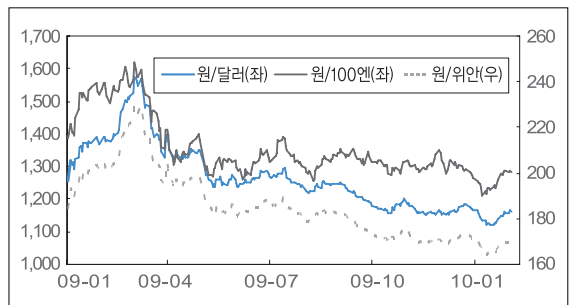
주요 금리 동향

(단위: % 기간 말)

| | '08. 12 | '09. 7 | 8 | 9 | 10 | 11 | 12 | '10. 1 | 2.3 |
|----------|---------|--------|------|------|------|------|------|--------|------|
| 국고채(3년) | 3.41 | 4.26 | 4.38 | 4.39 | 4.44 | 4.10 | 4.41 | 4.27 | 4.27 |
| CD(91일물) | 3.93 | 2.41 | 2.57 | 2.75 | 2.79 | 2.79 | 2.86 | 2.88 | 2.88 |

②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연초 급락세를 보였으나 1월 중순 이후 반등하여 1,150원 내외에서 등락

주요 환율 동향



• 최근의 환율상승은 미·중 긴축조치 우려, 유럽 신용불안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등에 주로 기인 - 中 기준을 인상(1. 18일)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지연 우려, 美 금융규제 방안(1. 21일) 및 그리스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 등

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 달러/유로 : (09. 11 말) 1.50 → (12 말) 1.43 → (10. 1. 13) 1.45
→ (2. 3) 1.40

③ (부동산시장) 강화된 대출규제,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은 '09. 4/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다만, 강남권은 재건축사업 가시화로 '09. 12월 중순 이후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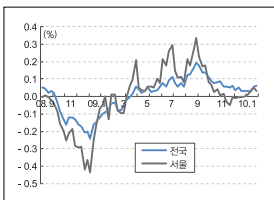
* 강남3구 재건축가격 상승률(전주비,%) : (12. 14) 0.10 (12. 21) 0.16 (12. 28) 0.05 (10. 1. 4) 0.44 (1. 11) 0.44 (1. 18) 0.34 (1. 25) 0.53

• 전세시장은 방학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광역학군제 수정*등의 영향으로 우수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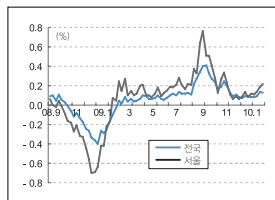
* 강남3구 전세가격 상승률(전주비,%) : (1. 4) 0.31 (1. 11) 0.59 (1. 18) 0.45 (1. 25) 0.71

* 특목고 모집지역 제한(전국 → 시·도), 일반계고 배정시 통학편의 고려 등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 (08. 9 ~ '10. 1)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 (08. 9 ~ '10. 1)



2. 실물경제 동향

1.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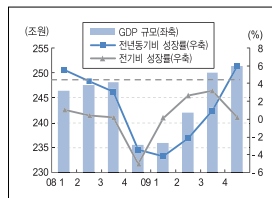
- ① (최근 동향) '08. 4/4분기 급락했던 GDP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09. 3/4분기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09. 4/4분기는 2/4~3/4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로 전기비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 성장을 유지(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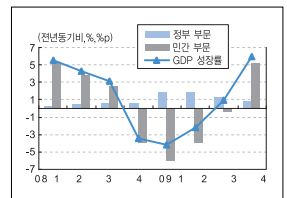
• '09. 상반기는 정부부문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부문의 위축을 보완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줄어드는 모습

* '09. 4/4분기 중 민간부문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당부분 기저 효과에 의한 것으로 아직 자생적인 회복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

GDP 규모 및 성장률



정부 및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



② (향후 전망) 아직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금년 중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경우 수출 및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IMF의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09. 9) 3.1 → (10. 1. 26) 3.9

• 대내외 여건 개선과 함께 그간 부진했던 설비투자의 회복이 예상되고 민간소비도 개선 전망

• 다만, 환율하락, 유가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2. 고용

- ① (최근 동향) 희망근로사업 종료('09. 6~11월)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가 소폭에 그치는 등 개선 흐름

• 공공행정 제외시 취업자 수 감소가 12월 들어 큰 폭 축소

| | '09. 7 | 8 | 9 | 10 | 11 | 12 |
|------------|--------|-------|-------|-------|-------|-------|
| 취업자 증감(만명) | △7.6 | 0.3 | 7.1 | 1.0 | △1.0 | △1.6 |
| 공공행정 제외시 | △39.4 | △31.8 | △25.5 | △32.3 | △32.8 | △16.7 |

②(향후 전망) 경기회복 및 고용대책 추진 등으로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는 당초 예상(20만명)보다 늘어난 전망

- 3~6월은 희망근로사업 재개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 이후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3만개, 6~12월) 등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고용상황 추가개선 예상

3. 경상수지

①(최근 동향) '09. 12월 중 흑자규모가 전월에 비해 감소(42.8억 → 15.2억달러)

- 원유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환율 하락에 따른 출국자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

* 경상수지(억달러) : (09. 7)44.2 (8)19.2 (9)40.5 (10)47.6 (11)42.8 (12)15.2

②(향후 전망) 2010년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수준의 흑자 전망

- 유가상승, 환율하락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 등이 흑자 감소요인이며, 계절적 요인으로 1~2월과 7~8월에는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 또는 균형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4. 소비자물가

①(최근 동향) '10. 1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폭설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

* 소비자물가(%) : (09. 6)2.0 (7)1.6 (8)2.2 (9)2.2 (10)2.0 (11)2.4 (12)2.8 (10. 1)3.1

②(향후 전망)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인플레이션리 등 일부 불안요인이 있으나 3% 내외의 안정세 예상

III. 평가 및 대응

1. 평가 및 시사점

① 최근 국내경제는 기저효과, 재정지출 여력 감소, 일시적 요인*등으로 실질·금융시장 지표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흐름은 지속

* 신종플루, 폭설, 이상한파, 희망근로사업 중단 등

- 소비·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도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

* 소비재 판매(전월비, %) : (09. 10) 2.9 → (11)△1.1 → (12) 1.7

* 설비투자지수(전월비, %) : (09. 10)△5.6 → (11) 7.7 → (12) 4.0

② 금년 들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관련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연초에 나타났던 환율하락·유가상승이 재개될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담
- 주요국의 확장기조 조절이 중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겠으나 단기적으로 회복속도 둔화 가능성
- 고부채 국가 신용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상존

③ 당초 예상한 연간 5%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다이나, 하방위험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 필요

- 여건변화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한 방향으로의 급변 가능성은 크지 않음

* (+ 요인) 세계경제 회복, 국내 민간부문 회복 등 펀더멘탈 개선
(- 요인) 유가상승, 환율하락, 주요국 긴축정책, 유럽 신용불안 등

-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필요

2. 정책대응 방향

- ◇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견지
- ◇ 부동산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강구

-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 등 당초 지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 총지출(조원) : (09본예산)284.5 (09추경)301.8 (10)292.8
 상반기재정집행(주요 사업비 기준, %) : ('08실적)49.6 ('09실적)64.8 ('10목표)60

- **(금융)**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분간 현재의 확장기조를 유지
 -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 적용
 -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동산 빈번거래에 대한 세정강화 등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봄 이사철에 대비하여 재개발 시기조정 등 수급조절 방안 추진
 -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 심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수준 최소화 등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
 -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10. 6월 시한) 등 한시적 조치를 충격 없이 정상화해 나가면서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본 자료는 2010년 2월 2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고용지원 관련 조세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 **(도입 취지)** 고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조속한 경기회복에 기여

해외 사례

- 미국 : 금년 1. 29일 오바마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인원 1인당 5천달러의 세제지원 방안 발표(1기업당 한도 : 50만달러, 총세수감 : 330억달러)
- 프랑스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법인세 부담 경감(08년 시행)

- **(주요 내용)**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고용 인센티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인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협의하였음

【대상업종】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

【시행시기】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11. 6월 말까지
【기대효과】

- ①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2년간 고용증가 규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에도 기여
 - ② 동 제도와 함께 장기실업자의 취업시 세제지원(월 100만원 소득공제)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와 3D업종 등의 구인난 및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③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효과 발생
- **(사후관리방안)** 동 제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 **(향후 조치사항)** 동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2. 중소기업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도입 취지)** 실업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

하고 구직·구인 DB(Work-Net)를 활용한 인력
미스매칭 해소

- **(주요 내용)**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월 100만원 소득공제)을 3년간 제공

【적용대상】 ①, ② 모두 충족

① 장기 미취업자일 것 (i~iii 모두 충족)

i)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ii) 취업일 이전 3년간 계속하여 미취업상태에 있을 것

- 단,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한 기간은 제외

iii) 취업일 현재 구직 DB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구인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2011. 6. 30일까지 취업할 것

【지원내용】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 소득공제

【기대효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 구직자의 3D 업종 등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구인·구직 DB를 활용한 인력 미스매칭 해소 기대

- **(향후 조치사항)** 동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01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 본 자료는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 29(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 · 의결하였음
-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마련되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공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 예산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예산 조기집행 지원
 - 현재의 경기회복 기초를 공고화하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지원하기 위해
 - 긴급입찰제도 및 턴키공사 등을 활용하여 조기 착공 및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 공모절차는 가급적 상반기에 완료하여 이 · 불용 최소화하도록 함
 - ②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
 - 공공기관에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감을 위해

- 적극 노력토록 하고
-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총리지시 2009-4호)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음
- ③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차등기준 강화 등
 - 경쟁 도입, 내부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차등 수준을 강화토록 하였음
 - 차등 등급 수를 5개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배분 비율은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최고 및 최저 등급을 ’09년도 각각 5%에서 ’10년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함
 -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과의 차이를 ’09년도 1.5배에서 ’10년도에는 2 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수준을 강화함
 - 장기교육훈련자 등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④ 위원회 참석비 관련 규정 신설
 -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의무화

-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됨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I. 일반지침

- ◇ 우리 경제의 최근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각 공공기관은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기 불확실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공사 발주의 령일로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병행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조기 착공한다.
 -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급적 상반기 중 공모를 완료하여 이월·불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제331호)」을 적용한다.

-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무기기, 자동차 등 자산취득시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2009-4호)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한다.
 -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 외부 회계감사, 경영공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효율성을 제고한다.
 - 각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히,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집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의 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각 기관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정상적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으로 조직 및 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방안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각 기관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역

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무기계약직 전환인력의 처우개선 등 예산조치는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필요시 해당기관별로 이·전용을 통해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 할 수 있다.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 인건비

-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한다.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다만, 인턴사원 채용, 정부업무위탁으로 인한 관련 소요경비,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한다.
- 예비비에 계상하는 총인건비는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채용 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 예산절약을 위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평가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각 기관은 예산편성시에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 성과급은 2009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편성·집행한 기관은 동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장기교육훈련자 등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차등 등급 수는 5개 등급 이상,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경비

- 정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비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한다.
 - 유흥업종(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설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홍포류판매)
-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를 소명한다. 또한,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재함

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
- 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국제회의 등 행사는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국제세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 물품구매, 판공비 등 각종 경상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공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은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카드의 사용범위, 절차 등의 기준을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예시)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③ 사업비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①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②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③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행 및 집행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경영효율성·생산성 향상, 핵심역량 강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아웃소싱으로 절감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지식서비스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지식서비스산업 범위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1항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④ 예비비

- 각 기관은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목적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인턴사원 채용에 따른 소요 경비, 주무부처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 경비,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는 목적예비비(인건비 예비비포함)를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기타

-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상경비 각 총액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임직원의 성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한다.

- 예산성과금은 보수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정부의 예산성과금제도에 준하여 운용한다.

-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관은 이자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출계획과 차입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1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본 자료는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에서 발표한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10. 1. 29(금) '10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09. 7 ~ 12월간 13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고·발표하였음

• '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72개, 기타공공기관 41개 등 총 136개 기관의 고객 Pool*을 대상으로 실시

* 공기업 : 16,004표본, 준정부기관 : 45,004표본
기타공공기관 : 24,163표본

■ 주요 조사결과

① (총평) 공기업 평균 92.0점, 준정부기관 평균 86.7점,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82.7점으로 조사되어, 제도 시행*('99) 이후 지속 상승

* 공기업은 '99년, 준정부기관은 '04년, 기타공공기관은 '05년부터 시행

• 적극적인 CS마인드 제고 및 컨설팅 제공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미흡' 기관이 축소되고 있으나, '09년도에 처음으로 재정부 통합조사를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은 절반(20개)이 미흡한 수준

②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등 22개 기관(공기업 전체의 95.6%)이 '양호' 수준으로서 고객 중심의 경영풍토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

• 최상위 : 한국가스공사로서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와 고객사와의 공동마케팅 전개 등 상생경영 추구

• 전년 대비 향상도 최우수 :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보금자리 주택 설계시 실수요자의 요구 반영 노력, 기관통합에 따른 고객의 기대감 반영(양호 → 우수)

③ (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등 46개 기관(준정부기관 전체의 63.9%)이 '양호' 수준으로서 고객 중심의 경영풍토 정착화 단계로 진입중

- 특히, 전년도 '미흡' 기관(19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개 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보통' 또는 '양호' 등으로 향상

공공기관 유형별 고객만족도 지수 추이

| 구분 | '99 | '04 | '08 | '09 | 전년 대비 |
|---------|-------|--------|-------|--------|-------|
| 공 기 업 | 58.1점 | '79.4점 | 89.3점 | '92.0점 | ↑2.7점 |
| 준정부기관 | - | 72.5점 | 84.1점 | 86.7점 | ↑2.6점 |
| 기타공공기관* | - | - | - | 82.7점 | - |

* '09년 이전에는 주무부처 주관 또는 기관자율로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디자인진흥원

- 최상위 : 한국농어촌공사로서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고객 목소리를 듣는 VOC 활용으로 능동적 서비스 개선, CEO·임원의 적극적 CS 실천운동 전개
- 전년 대비 향상도 최우수 :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제고로 고객편의 증가(미흡 → 양호)

④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 20개 기관(기타공공기관 전체의 48.8%)이 '미흡' 기관으로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 요구

- 최상위 : 코레일네트웍스로서 전사적 CS 범업과 TFT 활동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적극 개선

■ '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특징

- 국책은행, 대학병원 등 국민체감형 기타공공기관 41개를 추가하여 재정부 통합조사기관 확대 : 100개 ('08) → 136개 ('09)
- 조사설계자를 재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 기관별 조사설계비도 재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조사대상사업 및 설문항목 등을 Zero-Base에서 재설계
- 기관별 고객만족도 지수도 사업별 1:1 가중치 산출방식에서 사업별 모집단 수, 매출규모 등을 감안, 차등 가중치 산출방식으로 개선

■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알리오)에 통합공시
 - 기타공공기관도 내·외부 평가지표로서 활용
 - *하도록 권고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마인드 제고

* '09년도 조사대상 41개 기타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은행 등 10여개 기관만 부서·개인평가에 활용

- 영화진흥위원회 등 27개 미흡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만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 특히, 2년 연속 미흡기관(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적극적 개선 유도

* 준정부기관(7개) : 한국거래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타공공기관(20개)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예술의전당, 강원랜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 아울러, 조사기관과 연계하여 CEO·임원대상 포럼 개최,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풍토를 확산해 나갈 계획

참고 1 '09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고객만족도 수준 현황

1 공기업

| 구분 | 공기업1 : SOC유형 (13개) | 공기업2 : 서비스/진흥/제조 (10개) |
|-----------------|---|--|
| 우수 (17개, 73.9%) |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조폐공사 |
| 양호 (5개, 21.7%)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대한주택보증,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
| 보통 (1개, 4.4%) | - | 대한석탄공사 |

2 준정부기관

| 구분 | 검사·검증 (4개) | 문화·국민생활 (8개) | 산업진흥 (6개) | 연·기금 운용 (15개) | 중소형기관 (39개) |
|-----------------|------------|------------------------------|-------------------------------|--------------------|--|
| 우수 (20개, 27.8%) |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

| 구분 | 검사·검증 (4개) | 문화·국민생활 (8개) | 산업진흥 (6개) | 연·기금 운용 (15개) | 중소형기관 (39개) |
|-----------------|--------------------------|--|------------------|--|--|
| 양호 (26개, 36.1%) |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청소년수련원 |
| 보통 (19개, 26.4%)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교육기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 미흡 (7개, 9.7%) | - | - | 한국거래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③ 기타공공기관

| 구분 | 대학병원 (13개) | 국책은행 (3개) | 교육기관 (4개) | 문화·국민생활 (13개) | 산업경제 (8개) |
|-----------------------|--|--------------------------|---|--|---|
| 우수 (9개, 21.9%) | 전남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 중소기업 은행 한국산업 은행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전쟁기념사업회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 인천항만보안(주) |
| 양호 (4개, 9.8%) | 제주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 한국수출 입은행 | - | 경북관광개발공사 | - |
| 보통 (8개, 19.5%) | 경상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 - | - | 대한적십자사 | 부산항만보안(주) 안산도시 개발주식회사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
| 미흡 (20개, 48.8%) | 강릉원주 대학교치과 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한국원자력 의학원 | - | 광주과학 기술원 한국과학 기술원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예술의전당 ㈜강원랜드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수도권매립지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

참고 2 '08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수준 변화 현황

① 공기업

| 구분 | SOC (13개) | | | 서비스·진흥 ·제조(10개) | | |
|----------------|--------------|------|------|--------------------|------|------|
| | | '09년 | '08년 | | '09년 | '08년 |
| 08년 대비 상승기관 | 부산항만공사 | 우수 | 양호 | 한국산재의료원 | 우수 | 양호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우수 | 양호 | 한국감정원 | 우수 | 양호 |
| | 한국공항공사 | 우수 | 양호 |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 | 우수 | 보통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우수 | 양호 | 대한주택보증 | 양호 | 보통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수 | 양호 | | | |
| 08년 대비 하락기관 | | | | 대한석탄공사 | 보통 | 양호 |
| | | | | | | |
| 수준 유지기관 | 인천항만공사 | 우수 | 우수 | 한국관광공사 | 우수 | 우수 |
| | 한국가스공사 | 우수 | 우수 | 한국방송광고공사 | 우수 | 우수 |
| | 한국석유공사 | 우수 | 우수 | 한국조폐공사 | 우수 | 우수 |
| | 한국수자원공사 | 우수 | 우수 | 한국광물자원공사 | 양호 | 양호 |
| | 한국전력공사 | 우수 | 우수 | 한국마사회 | 양호 | 양호 |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우수 | 우수 | | | |
| | 한국도로공사 | 양호 | 양호 | | | |

② 준정부기관

| 구분 | 검사검증 (4개) | | | 문화·국민생활 (8개) | | |
|----------------|--------------|------|------|-----------------|------|------|
| | | '09년 | '08년 | | '09년 | '08년 |
| 08년 대비 상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우수 | 양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통 | 미흡 |
| | 대한지적공사 | 양호 | 보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통 | 미흡 |
| | | | |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 | 보통 | 미흡 |
| 수준 유지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 | | 도로교통공단 | 우수 | 우수 |
| | 교통안전공단 | 양호 | 양호 |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 우수 | 우수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양호 | 양호 |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 양호 | 양호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보통 | 보통 |
| | | | | | | |

| 구분 | 산업진흥 (6개) | | | 연·기금운용 (15개) | | |
|----------------|---|----------------------|----------------------|--|--|--|
| | | '09년 | '08년 | | '09년 | '08년 |
| 08년 대비 상승기관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우수 | 보통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보통 보통 |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 수준 유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 우수 우수 양호 양호 | 우수 우수 양호 양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사학연금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 |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미흡 |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미흡 |

* 산업진흥 중 한국거래소는 '09년 신규(미흡 수준)
* 연·기금 운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양호 수준)은 신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양호 수준)은 통합기관

| 구분 | 중소형기관 (39개) | | | 중소형기관 | | |
|----------------|--|--|--|---|--|--|
| | | '09년 | '08년 | | '09년 | '08년 |
| 08년 대비 상승기관 |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 |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수련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 08년 대비 하락기관 |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고용정보원 | 보통 미흡 | 양호 보통 |
| 수준 유지기관 |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파진흥원 |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양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미흡 |

* 중소기업기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09년 신규(양호 수준)
* 중소기업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양호), 한국콘텐츠진흥원(보통), 한국산업기술진흥원(보통),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흡)은 '09년 통합

참고 3 고객 중심 경영 우수사례 현황

1 공기업(가나다 순)

| 기관명 | 고객 중심 경영사례 |
|--------------|---|
| 인천국제 공항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I(세계공항협회) 서비스평가 4연패, Global Traveller 최고공항 4연패, SKYTRAX 최고공항상 등 권위 있는 국제 시상 석권 등의 대외 성과 첨단 IT기술로 출입국 과정을 자동화한 U-Airport 구현을 통해 입출국 시간 단축으로 세계 최고의 출입국 신속성 구현 밀레니엄 홀 문화공연, 터미널 내 Spot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고객의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여 문화공항 (Culture Port) 구현 |
| 한국 가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지역본부 단위까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CS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CS 추진체계 진단과 CS 추진 활성화를 유도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 경기변동 및 금융위기에 따른 산업용 물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으로 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수준 향상 도모 고객의 필요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Biz포털 신설과 고객지원창 개선을 통해 웹고객의 접근성 향상 |
| 한국 수자원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ter-Pro' 라는 서비스 아이덴티티를 개발·활용하여 서비스 이미지 구축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물값 동결을 통해 자치단체 및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수돗물 검사 품질 인증제 실시, 계량기 동파 방지팩 개발, 수돗물 전문 콜센터 운영 등으로 고객의 신뢰와 편의 증진 |
| 한국 전력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 자율 진단 지표'를 개발·적용하여 즉시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웹스톱 서비스를 강화 모바일 전기요금 청구·납부서비스 개발, 3자녀가구 전기 할인제도 확대, 아파트의 개별 세대까지 사용정보 제공 등 고객편의 중심의 서비스 개선 고객자문단 운영, 서비스개선 Idea 공모, 전기사용 UCC 공모 등을 통해 고객의 소리 자원화를 위한 고객참여형 CS 활동 기반 구축 |
| 한국토지 주택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쪽방거주자 등) 고객유형별 맞춤형 주택공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국내 최초 보급자리 주택분양 사전예약제 실시로 고객 중심 공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수요자 사전 니즈조사를 통해 설계·시공에 반영 토지매수고객을 위한 고객 Happy-up 활동 실시로 고객감동 서비스 추진 <p>* Happy-up 활동 : 소유권이전서류 무방문 서비스, 무료 세무상담 등</p> |

② 준정부기관(가나다 순)

| 기관명 | 고객 중심 경영사례 |
|----------|--|
| 국립공원관리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안내소 및 탐방지원센터 등 고객접점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탐방서비스 제공과 쉼터공간으로서 국립공원별 특화 운영 •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생태, 자연해설, 찾아가는 국립공원 등) 운영으로 탐방객 니즈를 건인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제고 • 고객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고객 접점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 위한 이동소장실 운영 |
| 도로교통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8.15)에 따른 교육인원 폭주 현상을 고객의 조기 면허 취득 희망에 부응하고,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교육 상설화를 통해 해당 시점 교육 횟수 2배(489회→ 941회)로 증회 • 정부정책 및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운전자교육 도입 및 실시 • 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과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 한국농어촌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가 직접 고객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고객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사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 위로 부더의 CS 실천운동 전개 • 고객의 소리를 유형별로 분석, 서비스 개선에 반영(ex, 농가 경영회생지원제도의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617개 농가 212억원 이자 절감) • '웰촌(Well村) 포털'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 신문고, 고객제안, VOC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특화 서비스 전개 |
| 한국수출보험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효율화에 따른 조직슬림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CS 경영 이행을 위한 CS 전담조직 확대, 고객센터 도입, 전 직원 CS 교육 이수제 등 CS 경영 전개 • CEO의 강력한 CS 경영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CS 경영 선포식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전사적 CS 실천 붐업 조성 • 수출보험 특성을 고려한 13개 CS 역량을 정의하고 업무 프로세스별 고객니즈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활동으로 피드백 |
| 한국자산관리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C 발굴에 따라 고객의 핵심니즈 충족을 위한 약식감정 서비스 확대, 채납세액 등 각종 행정정보 실시간 제공, 공매 서류 전자 송달 서비스 전개 •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의를 통한 지방세 공매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한 Win-Win경영 실현 • 신규 부실채권 인수방식(2단계 유통화 인수방식 등)을 도입 및 부실채권 매입 현가할인을 하향조정으로 금융회사의 금리변동 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 |

③ 기타공공기관(가나다 순)

| 기관명 | 고객 중심 경영사례 |
|------------|---|
| 전남대학교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점 부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감성적 교육을 집중, 강화함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을 목표로 점점 시설환경 개선에 주력 • 고객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순서 안내하기" 프로그램 정착을 통해 고객 편의 증진 • 고객만족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화순병원) |
| 중소기업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전문은행이라는 장벽을 탈피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SMART SERVICE"캠페인을 실시 • 대고객 서비스 혁신에 대한 선포식을 갖고 전 사원이 SMART서비스 실천 연수를 실시 • 점점에 SMART서비스 실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전 직원의 복장, 명함에 SMART서비스를 나타내고 고객서비스 실천 |
| 코레일 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점서비스매뉴얼 구축, 서비스매뉴얼교육, 현장점검반가동을 통해 점점인 현장의 서비스개선에 역량을 집중 • CS 성과에 대해 서약서를 작성, 선언하고 이행표준에 대한 품질을 점검하며 CS 미흡직원에 대해서는 1:1 서비스 현장 코칭을 강화하여 점점의 서비스품질을 제고 |
| 주택관리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 입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인 "관리홈닥터제" 실시와 가사지원을 돕는 '돌봄서비스' 실시를 통한 소외 계층 지원 • 불우 입주민과 기업의 후원을 연결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 • 입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플라자' 운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입주고객 편의 증진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요구를 집중 관리하여 직원 1인당 10개의 기업고객을 집중 관리하는 '고객전담제'를 실시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제공 • '고객전담제'를 통해 고객정보 DB를 체계화하여 기업체 요구를 체계적으로 교과과정에 반영함 • 산업체와 재학생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사시스템을 재구축함(FL System) |

참고 4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공공기관 서비스 수준 및 대국민 만족도의 객관적 측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 도모

*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은 '99년, 준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은 '04년, 기타공공기관은 '07년부터 실시

2 통합조사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법 제13조 제2항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3 통합조사 대상 : 한국전력공사 등 136개 기관

-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72개, 기타공공기관 41개
- * 출연(연) 등 120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주관 또는 기관 자율조사

4 조사방법

- 해당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실시

* 공기업 : 16,004표본, 준정부기관: 45,004표본, 기타공공기관: 24,163표본

5 조사모델 및 실시업체

- 조사모델 :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실시업체
 - 조사설계자 : 한국생산성본부
 - 주관사업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기술과가치
 - 실사업체 : 한국궤립조사연구소 등 10개 업체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 공공기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담당 -

* 본 자료는 2010년 1월 27일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할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1. 27(수) 10:30,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
 - 동 센터는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 연구와 관련 자료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설립되었으며,
 - 그동안 꾸준히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연구 기반을 갖추는 등 준비 작업을 수행한 끝에, 이 날 정식 개소식을 개최하게 된 것임
 - 이날 개소식에는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연천·이창우 서울대 교수 등 정부·관련기관·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이용걸 차관은 축사를 통해 향후 센터가 공공기관 정책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 주기를 희망하면서,
 -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공기관 Agenda를 발굴하고, 정부·공공기관·학계·산업계 등을 네트워킹하여 다양한 관점과 의견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기능 및 운영계획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박정수)는 공공기관 정책 연구, 경영평가 분석 등 공공기관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 예정
 - * 공공정책연구팀(성명재 팀장), 경영평가분석팀(윤태범 팀장) 등 2개 팀, 17명으로 구성
 - 공공정책연구팀은 공공기관의 기능 점검, 지배구조, 경제기여도 분석, 외국 운영사례와의 비교, 경영효율화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
 - 경영평가분석팀은 공공기관별 평가자료의 축적,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표개발 및 지표체계 개선 등을 담당
 - 이 외에도 새로운 이슈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공공기관 포럼 운영¹⁾, 국제기구(OECD 등)와의 유대 및 협력활동²⁾ 등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활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
 - 1) 매월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임직원,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한 정례 포럼 개최(지난 1. 20 제1회 공공정책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 주재발표)
 - 2) 5월 초순, 개소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 마련
- 금년에는 공공기관의 GDP 기여도 분석, 자율책임 경영의 확립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및 재무

건전성 관리 방안 연구, 해외공공기관 운영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예정

| 재정통계 |



- 교통세 예산 및 징수
- 교통세 부과
- 교육세 예산 및 징수
- 연도별 실행관세율의 변화 추이
- 연도별 관세환급률의 변화 추이

1. 교통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 율 | |
|------|------------|--------------|------------|--------|--------|-------|-------|
| | | | | | | (B/A) | (C/A) |
| 1994 | 3,039,400 | 2,459,132 | 2,457,167 | - | 1,965 | 80.9 | 80.8 |
| 1995 | 3,555,800 | 3,375,401 | 3,371,752 | - | 3,649 | 94.9 | 94.8 |
| 1996 | 4,770,400 | 4,826,009 | 4,823,970 | - | 2,039 | 101.2 | 101.1 |
| 1997 | 6,149,400 | 5,547,139 | 5,547,122 | - | 17 | 90.2 | 90.2 |
| 1998 | 7,170,000 | 6,504,046 | 6,503,963 | - | 83 | 90.7 | 90.7 |
| 1999 | 5,391,732 | 5,313,474 | 5,296,940 | 7,286 | 9,248 | 98.5 | 98.2 |
| 2000 | 9,442,400 | 8,405,207 | 8,403,613 | 393 | 1,201 | 89 | 89 |
| 2001 | 11,022,400 | 10,587,760 | 10,534,875 | 254 | 52,631 | 96.1 | 95.6 |
| 2002 | 10,128,600 | 9,495,683 | 9,479,279 | 2,008 | 14,396 | 93.8 | 93.6 |
| 2003 | 10,561,200 | 10,130,251 | 10,000,473 | 98,427 | 31,351 | 95.9 | 94.7 |
| 2004 | 11,364,900 | 10,200,462 | 10,065,117 | 95,093 | 40,252 | 89.8 | 88.6 |
| 2005 | 10,377,000 | 10,336,940 | 10,287,765 | 32,421 | 16,754 | 99.6 | 99.1 |
| 2006 | 11,721,900 | 9,617,804 | 9,593,771 | 20,477 | 3,556 | 82 | 81.8 |
| 2007 | 11,324,000 | 11,510,946 | 11,463,503 | 41,331 | 6,112 | 101.7 | 101.2 |
| 2008 | 12,035,500 | 11,941,971 | 11,909,295 | 24,527 | 8,149 | 99.2 | 99 |

주: 교통세는 2007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전환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교통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K)

| 연도 | 구분 | 합계 | | | 회발유 | | | 경유 | | |
|------|----|----|------------|-----------|-----|------------|-----------|----|------------|-----------|
| | | 인원 | 과표 | 세액 | 인원 | 과표 | 세액 | 인원 | 과표 | 세액 |
| 1994 | | 5 | 3,814,691 | 2,626,881 | 5 | 1,252,425 | 2,143,546 | △5 | 2,562,266 | 483,335 |
| 1995 | | 5 | 4,824,343 | 3,455,326 | 5 | 1,593,042 | 2,758,224 | △5 | 3,231,301 | 564,008 |
| 1996 | | 5 | 6,813,811 | 4,382,259 | 5 | 2,219,752 | 3,625,777 | △5 | 4,594,059 | 756,482 |
| 1997 | | 5 | 36,079,943 | 5,666,577 | 5 | 11,395,841 | 4,595,325 | △5 | 24,684,102 | 1,071,252 |
| 1998 | | 5 | 28,507,149 | 6,737,311 | 5 | 9,741,610 | 5,153,544 | △5 | 18,765,539 | 1,583,767 |
| 1999 | | 5 | 29,286,691 | 9,048,617 | 5 | 10,078,106 | 6,517,057 | △5 | 19,208,585 | 2,531,560 |
| 2000 | | 5 | 27,918,650 | 8,358,722 | 5 | 9,774,679 | 5,965,984 | △5 | 18,143,971 | 2,392,738 |
| 2001 | | 5 | 27,160,884 | 8,248,404 | 5 | 9,380,604 | 5,629,082 | △5 | 17,780,283 | 2,619,322 |
| 2002 | | 5 | 29,118,475 | 8,922,052 | 5 | 9,503,587 | 5,398,980 | △5 | 19,614,888 | 3,523,072 |
| 2003 | | 5 | 29,653,184 | 9,365,172 | 5 | 9,286,273 | 5,172,549 | △5 | 20,366,911 | 4,192,623 |
| 2004 | | 5 | 30,744,431 | 9,807,835 | 5 | 9,179,590 | 4,855,083 | △5 | 21,564,841 | 4,952,752 |

| 구분변경 | | 인원 | 과표 | 세액 | 공제세액 | 납부할세액 | 교육세 | | | |
|------|-----|----|------------|------------|-----------|------------|-----------|--|--|--|
| 2005 | 합계 | 16 | 31,712,595 | 11,794,536 | 1,469,209 | 10,325,327 | - | | | |
| | 회발유 | 7 | 9,511,910 | 5,137,124 | 282,530 | 4,854,594 | - | | | |
| | 경유 | 9 | 22,200,685 | 6,657,412 | 1,186,679 | 5,470,733 | - | | | |
| 2006 | 합계 | 12 | 32,285,814 | 12,682,937 | 1,649,078 | 11,033,859 | 1,655,077 | | | |
| | 회발유 | 7 | 9,503,969 | 5,039,851 | 214,065 | 4,825,786 | 723,866 | | | |
| | 경유 | 5 | 22,781,845 | 7,643,086 | 1,435,013 | 6,208,073 | 931,211 | | | |
| 2007 | 합계 | 12 | 33,004,896 | 13,229,130 | 1,810,655 | 11,418,484 | 1,712,761 | | | |
| | 회발유 | 6 | 9,512,646 | 4,916,967 | 218,969 | 4,698,008 | 704,694 | | | |
| | 경유 | 6 | 23,492,250 | 8,312,163 | 1,591,686 | 6,720,476 | 1,008,067 | | | |
| 2008 | 합계 | 13 | 31,473,819 | 12,020,099 | 1,364,335 | 10,655,787 | 1,598,363 | | | |
| | 회발유 | 6 | 9,960,017 | 4,742,573 | 194,550 | 4,548,022 | 682,201 | | | |
| | 경유 | 7 | 21,513,802 | 7,277,526 | 1,169,785 | 6,107,765 | 916,162 | | | |

주: 1. 인원란의 △표시는 타업종 겸업자를 나타냄
 2. 교통세는 2007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전환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교육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 율 | |
|------|------------|--------------|------------|--------|--------|-------|-------|
| | | | | | | (B/A) | (C/A) |
| 1982 | - | 197,870 | 197,870 | - | 3 | - | - |
| 1983 | - | 263,075 | 263,060 | - | 15 | - | - |
| 1984 | - | 285,004 | 284,827 | 14 | 163 | - | - |
| 1985 | - | 321,372 | 321,144 | 227 | 1 | - | - |
| 1986 | - | 372,598 | 372,407 | 1 | 191 | - | - |
| 1987 | 401,957 | 411,501 | 411,337 | 152 | 12 | 102.4 | 102.3 |
| 1988 | 448,425 | 512,290 | 512,282 | 1 | 7 | 114.2 | 114.2 |
| 1989 | 369,957 | 423,515 | 423,432 | 1 | 82 | 114.5 | 114.5 |
| 1990 | 478,249 | 521,285 | 521,262 | 1 | 22 | 109 | 109 |
| 1991 | 1,436,018 | 1,532,993 | 1,532,107 | 133 | 753 | 106.8 | 106.7 |
| 1992 | 1,773,313 | 1,823,941 | 1,822,297 | 236 | 1,408 | 102.9 | 102.8 |
| 1993 | 2,230,688 | 2,080,755 | 2,078,903 | 638 | 1,214 | 93.3 | 93.2 |
| 1994 | 2,520,100 | 2,541,953 | 2,539,578 | 517 | 1,858 | 100.9 | 100.8 |
| 1995 | 2,931,400 | 2,996,231 | 2,993,104 | 783 | 2,344 | 102.2 | 102.1 |
| 1996 | 4,387,600 | 4,128,386 | 4,124,152 | 836 | 3,398 | 94.1 | 94 |
| 1997 | 5,839,600 | 5,406,270 | 5,398,538 | 1,944 | 5,788 | 92.6 | 92.4 |
| 1998 | 5,263,800 | 5,215,573 | 5,203,132 | 4,765 | 7,676 | 99.1 | 98.8 |
| 1999 | 5,391,732 | 5,313,474 | 5,296,940 | 7,286 | 9,248 | 98.5 | 98.2 |
| 2000 | 5,857,100 | 5,819,063 | 5,798,300 | 9,689 | 11,074 | 99.4 | 99 |
| 2001 | 3,624,400 | 3,812,189 | 3,782,501 | 16,795 | 12,893 | 105.2 | 104.4 |
| 2002 | 3,672,600 | 3,575,717 | 3,531,575 | 28,452 | 15,690 | 97.4 | 96.2 |
| 2003 | 3,932,900 | 3,705,014 | 3,651,326 | 36,111 | 17,577 | 94.2 | 92.8 |
| 2004 | 4,238,600 | 3,582,529 | 3,529,520 | 33,413 | 19,596 | 84.5 | 83.3 |
| 2005 | 3,504,000 | 3,565,234 | 3,526,591 | 19,262 | 19,381 | 101.7 | 100.6 |
| 2006 | 3,695,700 | 3,452,667 | 3,420,417 | 12,693 | 19,557 | 93.4 | 92.6 |
| 2007 | 3,745,200 | 3,887,993 | 3,857,076 | 12,704 | 18,213 | 103.8 | 103 |
| 2008 | 4,116,900 | 4,219,845 | 4,175,650 | 17,453 | 26,742 | 102.5 | 101.4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연도별 실행관세율의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수입액 | 관세징수액 | 실행관세율 |
|------|-------------|-----------|-------|
| 1983 | 20,403,568 | 1,211,997 | 7.17 |
| 1984 | 24,719,217 | 1,593,959 | 6.44 |
| 1985 | 27,150,592 | 1,566,125 | 5.77 |
| 1986 | 27,951,840 | 1,942,559 | 6.95 |
| 1987 | 33,841,500 | 2,696,463 | 7.97 |
| 1988 | 37,977,463 | 2,573,562 | 6.78 |
| 1989 | 41,488,875 | 2,117,581 | 5.11 |
| 1990 | 49,659,084 | 2,765,371 | 5.57 |
| 1991 | 60,002,400 | 3,435,502 | 5.73 |
| 1992 | 64,111,600 | 3,153,190 | 4.92 |
| 1993 | 67,459,000 | 2,885,860 | 4.28 |
| 1994 | 82,594,836 | 3,448,887 | 4.18 |
| 1995 | 104,582,106 | 4,633,211 | 4.43 |
| 1996 | 121,321,512 | 5,309,471 | 4.38 |
| 1997 | 134,659,913 | 5,797,617 | 4.31 |
| 1998 | 133,871,814 | 3,835,991 | 2.87 |
| 1999 | 144,159,572 | 4,687,298 | 3.25 |
| 2000 | 182,774,386 | 5,799,720 | 3.17 |
| 2001 | 183,593,601 | 5,923,381 | 3.23 |
| 2002 | 192,146,641 | 6,601,282 | 3.44 |
| 2003 | 215,087,182 | 6,847,339 | 3.18 |
| 2004 | 259,928,154 | 6,796,491 | 2.61 |
| 2005 | 270,120,092 | 6,317,688 | 2.34 |
| 2006 | 298,863,978 | 6,858,419 | 2.3 |
| 2007 | 334,007,856 | 7,410,763 | 2.22 |
| 2008 | 473,143,925 | 8,775,691 | 1.85 |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5. 연도별 관세환급률의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 연 도 | 수출액 | 환급액 | 환급률 |
|------|-------------|----------|-----|
| 1983 | 190,426.6 | 9,473.0 | 5 |
| 1984 | 236,007.2 | 11,444.0 | 4.8 |
| 1985 | 264,067.8 | 11,356.0 | 4.3 |
| 1986 | 307,218.9 | 13,786.0 | 4.5 |
| 1987 | 390,068.3 | 19,850.0 | 5.1 |
| 1988 | 444,901.7 | 18,637.0 | 4.2 |
| 1989 | 421,044.8 | 15,494.0 | 3.7 |
| 1990 | 462,263.8 | 12,239.0 | 2.6 |
| 1991 | 528,963.2 | 10,392.0 | 2 |
| 1992 | 600,794.9 | 9,945.0 | 1.7 |
| 1993 | 661,999.8 | 9,677.0 | 1.5 |
| 1994 | 774,824.9 | 10,059.0 | 1.3 |
| 1995 | 967,948.9 | 12,197.0 | 1.3 |
| 1996 | 1,038,432.8 | 14,357.0 | 1.4 |
| 1997 | 1,282,541.9 | 12,625.0 | 1 |
| 1998 | 1,818,436.0 | 22,743.0 | 1.3 |
| 1999 | 1,688,732.6 | 20,974.0 | 1.2 |
| 2000 | 1,925,741.2 | 21,834.0 | 1.1 |
| 2001 | 1,920,815.9 | 22,770.0 | 1.2 |
| 2002 | 2,011,686.7 | 21,776.0 | 1.1 |
| 2003 | 2,285,594.4 | 22,357.0 | 1 |
| 2004 | 2,939,525.1 | 24,895.0 | 0.8 |
| 2005 | 2,940,890.4 | 23,384.0 | 0.8 |
| 2006 | 3,143,990.0 | 24,429.0 | 0.8 |
| 2007 | 3,477,137.0 | 24,360.0 | 0.7 |
| 2008 | 4,587,216.1 | 28,162.0 | 0.6 |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인터뷰]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 일자리 만들기 적극 나서야”

“공공기관들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과연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정부 산하 신설 연구기관인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소장을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만 한 시간 넘게 걸렸다고 의욕에 찬 모습이었다.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속한 연구센터로 공공기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문을 열었다.

재정관리가 전공인 박정수 소장은 지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으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을 맡게 됐다.

센터가 문을 연 후 첫 작업으로 ‘공공기관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분석’을 시작한 박 소장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제 기여도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제도의 개혁도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박 소장은 “공공기관은 대부분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현재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에너지, 금융 등 각각 다른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공통성과를 재는 계량지표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발전된 평가지표를 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또 그것을 매우 효율적인 평가방식으로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영어로 정리해서 수출하는 사업도 올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올해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고용’ 문제도 공공기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큰데 공공부문에 서비스업이 많다”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정부의 핵심 화두인 만큼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도 오는 17일 열리는 공공정책포럼과 5월 개최될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고용’으로 잡았다.

이번 공공정책포럼에는 진영곤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한다. 국제심포지엄에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해 ‘국가고용전략과 공공기관 선진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 소장은 “얼마 전에 조세연구원장실에 2010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다”며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 주위의 기대도 크고 할 일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연구원 17명으로 문을 연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는 최근 인원이 20명까지 늘었고 현재 박사급 연구인력을 더 뽑고 있어 25명으로 규모가 더 커질 예정이다.

그는 “프랑스에도 우리 센터와 비슷한 조직이 있다”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교류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10년 2월10일)

전월세 형평성 논란 왜?... 부동산세제 허점 노출

전월세 과세의 허점과 이 제도의 추진 과정은 우리나라 세제 개편 실상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월세 소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 과세와 어긋나는 전세보증금 과세가 탄생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성급한 추진 탓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이 제도의 시행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더욱이 공청회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 다주택 기준 그때그때 달라요

2002년 폐지된 뒤 내년에 부활되는 전세보증금 과세는 3채(3억원 초과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 당시 이 제도를 입안했던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초기인 테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 등을 고려해 1가구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주택 기준은 현행 월세, 양도세에서 정한 다주택 기준과 달라 너무 복잡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시각

이 많다. 월세에선 고가 주택의 경우 1채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2채 이상 보유자가 다주택으로 간주해 증가한다. 세금의 목적과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월세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옳다는 주장이 나온다.

◆ 사라진 고가주택 기준

월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으로 정해진 반면 전세보증금 과세에선 이런 기준이 아예 없다. 이로 인해 보유 주택이 3채만 넘지 않으면 기준시가나 보증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보증금이 훨씬 적은 저가 주택 3채 보유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견줘보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

◆ 월세만 봉인가

월세에선 기준시가 9억원이 넘으면 1주택자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고가 1주택자는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곳에 월세 또는 전세로 들어가면 세금이 없지만 자기 집을 월세로 놓고 이사하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선 월세를 놓은 고가 1주택자에게 일부 임대비용을 공제해주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전세금 과세 도입의 근거가 되는 전월세 간 형평성과도 부합한다.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김모(45·여·서울 여의도동)씨는 “얼마 전에 내 집을 월세로 놓고 은행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 33평짜리 전셋집을 구했는데 내년에 1000만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면서 “월세 소득자만 손해 보는 이런 불공평한 법을 누구 보고 지키라는 거냐”고 성토했다.

◆ 소득기준이 없는 소득 과세

현행 월세 과세는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면서도 정작 월세 소득 기준이 없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기준시가

9억원만을 갖대로 과세 여부를 판별하다 보니 월세 수입이 더 많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이 비과세되는 일마저 생긴다.

이런 허점을 없애려면 기준시가와 월세 수입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과세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못한 데다 정부도 징세 편의 등을 추구하다 보니 논리적인 맹점이 많이 생긴 게 사실”이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0년 2월9일자)

‘해 저무는 제국’ 영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초, 세계 금융시장에는 ‘영국 부도설’이 파다했다. 과도한 금융산업 비중, 취약한 국가 재정, 작은 경제 규모 등으로 결국엔 영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설이었다. 당시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바 있는 윌렘 뷰이터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영국이 ‘제2의 아이슬란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1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더디긴 하지만, 영국 경제는 언뜻 보기에 서서히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긴 침체에서 벗어나 작년 4분기에는 미미한 플러스 성장(전기대비 0.1%)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위기는 겨우 벗어났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치른 비용, 즉 1년 전보다 한층 악화된 재정이 영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이 유럽 재정 위기를 촉발했지만, 진짜 유럽의 뇌관은 영국이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시먼 존슨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신용등급이 심각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에 영국도 추가돼야 한다”며 “영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영국의 재정 상태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아일랜드까지 합쳐 PIIGS)’ 국가들에 못지 않다. 영국 정부는 부실에 빠진 금융회사들을 건져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달하는 1조 3,0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재정적자는 급속도로 불어났다. 2007년 GDP 대비 2.7% 수준이었던 적자 규모는 이듬해 5.5%, 그리고 작년엔 12.6%까지 치솟은 데 이어 올해는 13%도 돌파할 기세다. 2007년에 GDP 대비 36.5%에 불과했던 국가 채무도 올해는 8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운드화 가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그 동안 영국 경제를 지탱시켜 온 금융산업의 추락이다. 금융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법인세 세수의 4분의 1 이상을 맡고 있는 명실상부한 영국경제의 젖줄. 제조업기반이 이미 오래 전 무너진 상태에서 금융은 영국경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하지만 지금 영국 은행들이 보유한 총 부채 규모는 GDP의 5배를 넘어섰고, 이중 절반이 넘는 60%가량이 해외 차입금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다른 국가들은 침체만 벗어난다면 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영국은 금융산업이 무너지는 경우 도저히 단기간 내에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이 일명 토빈세라고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성 외환거래 등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인데, 영국의 자존심인 금융을 쥐어짜야 할 만큼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영국은 금융과 재정이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현실화한다면 그 파장은 끔찍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악화되면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고, 영국을 떠받치고 있는 해외자금의 이탈로 금융마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와 함께 세계금융의 중심인 시티(런던 금융가)가 몰락한다면, 그것은 또 한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일 수 밖에 없다.

그리스 포르투갈 재정위기의 전염가능성도 불안한 요인이다. 비록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지만, 남유럽 등 재정 불안 증폭 → 세계 금융시장 패닉 → 영국 금융산업 추가 손실'의 시나리오는 외면할 수 만은 없는 형편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영국의 파운드화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다 국제 발행의 상당 부분을 외국 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0년 2월8일자〉

2009년 조세지출보고서 분석해보니...

투자 않고 '감세' 만 눈독

금융위기 속 기업들은 투자나 구조조정 관련 세제 지원을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이익이 달린 감세 항목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구조 개선을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감세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은 철저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조세지출 내역에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의 명암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세감면 항목별 증감 내역

금융위기 효과 (단위: 억원)

| 증감 | 조세지출 항목 | 2008년 | 2009년 | 비 고 |
|----|-------------------------|---------|---------|------------------|
| - | 창업 중소기업 용자서류 인지세 면제 | 2 | 1 | 금융권 증기대출 기피현상 |
| -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 322 | 286 | 기업투자 긴축 |
| - | 임시 투자세액 공제 | 2조 1148 | 1조 9802 | |
| - | 법인 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시 세제감면 | 1342 | 1231 | 공장 이전 등 신규 투자 자제 |

원화약세 효과

| 증감 | 조세지출 항목 | 2008년 | 2009년 | 비 고 |
|----|--------------------------|-------|-------|--------------------------------|
| + |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면제 | 238 | 560 | 전체 외국인 투자액 감소에도 자본재 도입 세제감면 증가 |
| + |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점 개별소비세 면제 | 9 | 11 | 고환율(원화약세)로 해외 관광객 증가 |
| - | 공장자동차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1019 | 652 | 국내 기업의 설비 수입 감소 |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 조세지출보고서'

◆ 기업들, 투자·구조조정 감세 외면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산업 발전과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세 감면 규모는 420억원으로 전년(454억원)보다 7.5% 줄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 규모는 272억원으로 전년(60억원)보다 4.5배나 증가했다. 구조조정 기업 처리를 두고 정부가 동분서주한 것과 달리 기업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던 셈이다.

조세지출보고서는 그해에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서민이나 기업 세제지원 등으로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기록한 보고서다.

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들어간 감세 규모는 전년보다 커졌지만 내용은 부실했다.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략했다는 평가와 함께 폐지 논란이 일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조원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액은 지난해 286억원으로 전년(322억원)보다 12.6% 감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같은 시설투자라도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신고하려는 기업의 행태도 담겨 있다”며 “수혜 대상 85%가 대기업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최고 10%인 반면 생산성 향상 시설의 대기업 세액 공제율은 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불황기 감세효과’ 명암 엇갈려

금융위기의 불씨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경기 침체는 정부의 감세 항목에도 뚜렷한 명암을 남겼다. 정부의 독려에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중소기업 대출 관련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는 시들해진 반면 골프장, 카지노 입장료 감면에는 열광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 중소기업의 용자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회사가 중기 대출을 내주고 인지세를 면제받은 규모는 1억원으로 전년 수준(2억원)에 비해 반토막났다.

금융위기로 인한 상처가 덜했던 부유층이 열광한 감세 혜택도 있었다. 수도권 밖 골프장 입장 시 면제 혜택을 부여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모는 지난해 1339억원으로 전년(335억원)보다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정부가 당초 의도한 조세 정책과 효과가 엇갈리면서 감세 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임투자세액공제처럼 기형적으로 연장되는 감세 항목이 늘어날 경우 투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에 바람직한 정책 도구가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묶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0년 2월2일〉

[기고] 흡연을 줄이려면 담배세제 개편을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40.4%였던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이 작년 하반기에는 43.1%로 상승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매년 감세 효과를 나타내는 세금 구조에 기인한다.

흡연 억제 정책이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이 꼽힌다. 1970년대 초 영국의 흡연율은 50%였으나 최근에는 24% 수준이다. 영국은 담배세율을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조정한다. 2000년대 초에는 잠정적으로 물가상승률에 2~3%를 더해 조정했다. 물가연동제를 접목한 종량세 체계를 도입한 결과, 처음에는 소비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30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흡연율이 절반 아래로 푹 떨어지는 성과를 나타냈다.

영국의 담배 세금 구조는 외형상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흡연을 변화 추이는 정반대이다. 이면에는 조세제도의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종량세의 실질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자동조정 장치가 포함돼 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이런 차이가 영국에서는 흡연율을 절반으로 떨어뜨린 원동력이 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가가치세 등 다섯 가지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는 모두 종량세 세율 구조를 갖는다. 갑당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된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세액이 고정된다. 따라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2005년 세율이 현재까지 그대로이다. 그렇다 보니 담배의 실질가격이 낮아지면서 담배 소비도 1년에 41억 갑에서 47억5000만 갑으로 증가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동일한 세율구조를 채택한 서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많은 나라가 물가연동제를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물론 물가연동제 도입만으로 흡연율 하락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그런 제도 없이 흡연율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아일보 2010년 1월20일자〉

재정포럼

2010년 2월호 통권 제16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2월 16일 발행 / 제15권 제2호(통권 제16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